

연구보고 2011-09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김은설 조혜주 이보라

머 리 말

오늘날에 이르러서 영유아 보호서비스 목적으로 출발한 어린이집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유치원 역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넘어서서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점차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OECD에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제도적 이원화가 중복 운영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요구하게 될 전망이고,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더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연구는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시리즈 중 하나로서, 커리큘럼의 통합 방안, 인력의 통합 방안에 이은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한다. 그 간의 관련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보고서는 행·재정 통합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질문임에도 의견을 내고 참여해주신 영유아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한 발짝 앞당기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행정 및 재정에서 교육 관련 부처와 복지 관련 부처로 분할됨으로써 행·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관련 분야의 현황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통합적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가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제어울 두 부처(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현황을 시설설치·운영체계 및 재정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통합 추진 방안을 단기 및 중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적 통합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이 나아가야 할 행·재정상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규명하여,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단기 및 중기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문헌 자료, 선행 연구 검토

○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법, 제도, 정책 자료의 수집과 내용의 비교, 차이 도출을 통해 행·재정 통합의 방법을 추론하고자 하였음.

□ 외국의 행·재정 통합 사례와 현행 제도 조사, 비교.

○ 외국의 다양한 통합과정 또는 유·보의 행·재정적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함.

□ 설문조사 실시

○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 현행 행·재정 제도에 대한 의견, 통합의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공무원, 현장, 학계 전문가, 부모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회의 개최

○ 도출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제안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II. 유아교육·보육의 행·재정 현황

1. 전달체계 및 행정 인력

가. 전달체계

□ 유아교육의 전달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음.

□ 보육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짐.

나. 행정 및 지원 인력

- 유아교육 분야 행정 인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 공무원과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인력이 있고 그 외 유아교육진흥원 근무 지원 인력이 있음.
- 유아교육 분야 교육청(중앙부처 포함)과 진흥원 인력은 총 377명이며, 이 중 전문직 공무원(장학관, 장학사 등)은 187명으로 전체의 50% 정도임.
- 보육 지원인력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및 그 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및 전문인력, 기타인력,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수를 모두 포함하면 총 766명이며 보육정보센터 인력과 기타 지원 기관의 인력을 모두 합치면 총 1,162명임.

다. 전달체계와 인력의 비교

- 전달체계도를 보면, 유아교육은 교육청이 주축이 되고 보육시설은 행정 지자체가 주축이 되는 가운데, 유아교육에 비해 보육에 대한 지원 기관이 다양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유아교육 관련 인력은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음. 현재 전문직 공무원은 187명으로, 이를 교사 총 수에서 나누면 교사 195명 당 1명의 전문 멘토가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총 107명 정도로, 80개 유치원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732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보육시설 수는 49개소임. 유아교육과 비교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의 지원 인력인 전문직 공무원 집단이 교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질적 측면의 도움과 보육이 가진 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원의 우월한 측면이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함.

2. 재정

가. 자원 구성

- 유아교육은 2008년 이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100%에 가까운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재정에 속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됨.
- 보육의 경우는 유아교육과 달리 일반 회계에서 독립적인 예산을 둬.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로 구분되어 구성됨.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각각 25%가량을 충당함.

나. 재정 지출

- 유아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 사업은 크게 교직원운용 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또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유아교육재정은 총 1조 9천 2백 4십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임. 사업별로는 교사인건비인 교직원운용지원이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다음은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41.3%를 차지함. 나머지는 소수로, 유치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13.9%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장학이나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활동지원에는 2.4%정도가 포함됨.
 - 인건비와 아동 교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유치원의 질적 수준 제고 사업인 교육활동, 여건개선 예산은 전체의 16.3%인 313,751백만 원 규모임.
-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포함됨.
 - 보육사업 국가 총예산은 약 5조에 이룸. 각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78.0%로 예산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운영지원 항목으로 예산의 16.3%

가 투입되고 있어 이들 두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4.3%가 됨.

-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포함되는 '보육인프라구축'이나 교재 교구비 지원이 포함된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항목은 예산 중 2%정도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다. 예산 구조

- 제도적 차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활용 구조에서도 차이를 가져옴. 인건비와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순수하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들, 말하자면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지원, 장학,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이나 기능보강에 쓰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은 매우 미미하며 특히 보육이 더욱 심함.
- 국공립 유치원 투입 예산을 질적이고 비용이라고 보면 유아교육에서 이 항목 비용이 보육보다 높은 것은 당연함. 그러나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수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상호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육의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아동 당 질적 수준 제고 관련 예산의 비용을 산출해보면, 유아교육은 582,545원이고 보육은 81,645원임.

라. 비용 분담

-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에서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은 각각 22.3%와 63.7%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비교

- 재정 면에서의 통합은 재원의 흐름이 다르고 재정지출의 구조가 달라서 둘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 유아교육 재정은 전체 교육재정의 일부로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므로 보육의 일반회계 체제와 조정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재원체계가 완전히 변해야 함.
- 재정지출의 문제에서도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

자에게 위탁하여 인건비의 30~80%를 지원하고,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두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임.

3.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기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다르며 각 영역별로 다른 법령과 기준들이 혼합되어 있음.
- 각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은 교육을 위한 “학교”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육기관으로 성격이 강하며, 어린이집은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 “시설” 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4. 기관·시설 평가 체계

- 유치원 평가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 지역정책에 맞는 자체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 연수 등을 진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통지표 제공, 평가위원 연수 지원 등 평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며,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I. 외국의 행·재정 통합 모형

- 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각 유형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노력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 보고자 함.
- 첫째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형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 유형이 있어 부모들의 선택권은 넓으나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임.

-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교육부 관할이었던 유치원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부의 보육 업무와 행정적으로 '통합'되면서 교육부로 일원화 된 경우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는 모델임.
 - 유아교육과 보육간 통합 사업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교육과 동일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고, 그 이면에는 국가는 취업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인 교육적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에 우선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교육부라는 단일 부처 아래에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 시설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두 번째의 통합 형태는 스웨덴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분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분할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를 관할해 온 경우임.
- 스웨덴은 사회보건부 관할이었던 영유아학교(피르스콜라)가 재정적인 이유와 함께 교육적 측면에 대한 강화를 위해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함.
- 셋째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영아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호를, 그리고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교육적 성격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의 형태를 들 수 있음.
-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체제는 덴마크 및 핀란드의 경우와 형태는 비슷하나, 구분하고 있는 연령에서 차이가 남.
 - 최근 프랑스에서 2세 아동이 유아학교로 입학할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독일의 경우도 보육시설에 '교육적'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진다는 분석은 향후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형태와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함.

IV.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방향의 인식

1. 통합 필요성 인식

-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9.3%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11.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2.0%로, 그렇지 않다는 14.7%로 나타남.

2.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 개선 의견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영유아 연령이 차이가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2%,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38.0%로 비슷하게 나타남.
-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을 따르는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린이집을 학교 체계 속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27.6%, '유치원이 복지시설로 통합해야 한다'는 10.8%로 나타남.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제 3의 부처 업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26.1%,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11.4%로 나타남.
- 유치원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장학지원 제도가 없는 현 체제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8%,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3%로 비슷하게 나타남.
-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3, 5, 8시간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 운영체제에 대해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가 전체 69.2%, '유치원도 종일을 기본 운영으로 해야 하다는 의견이 27.2%로 나타남.

-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시간별 차등지불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차등지불이 불가능한 현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남.
- 세계 여러 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 모형의 다양한 방식 중 우리나라 통합 추진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해 각 집단별로 질문한 결과, 스웨덴형이 가장 지지가 높았고 다음이 뉴질랜드형이었음.

V. 유아교육과 보육 행·재정 통합 전략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전략 수립의 원칙

- 본 연구는 부모와 영유아의 이익 및 그들의 선호를 가장 먼저 고려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본 연구의 결론은 가치 지향적임.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과정이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조사는 기존 어떤 연구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관련자 집단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통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고자 함.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 단기 전략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사안	현행	개선전략
장학제도 확대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실시	-보육 장학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어린이집 장학 추진
이용시간별 비용책정	-유치원은 기본 반일제+종일제 추가 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기본과 연장/야간까지 구분하여 비용 책정

사안	현행	개선전략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일원화	
비용 지원 기준 시간	-유치원은 반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은 종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도 기본 시간에 한한 지원 -유치원 지원비에 급식포함
비용 규제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유치원 교육비 자율 책정	-유치원에도 기본 시간에 대한 교육비 기준 제시
연간 일정 차이	-어린이집 1월 1일 시작 -유치원 3월 1일 시작	-두 기관 동일하게 3월 1일 시작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중기 전략

- 중기는 3년 이후 6년 정도까지의 기간으로 초기 유·보 간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시기임.
- 보육이 교육부의 업무로 이관될 경우, 이에 관련된 법규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 가장 먼저 교육부에 '영유아보육과'가 설립되어야 하는 바, 이는 영유아교육국 하에 유아교육과와 영유아보육과(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지원과 등)를 같이 두어야 함.
-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일일 5~6시간 동안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반일제(연장제) 운영 교육기관으로, 만3~5세 유아들이 다닐 수 있음.
- 어린이집은 0~만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일제 보육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취원하도록 함. 운영은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임.
- 새로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업무로 보육이 이양되면서 모든 보육관련 재정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보육과의 담당 업무가 됨.
 - 아동보육료지원은 유치원의 유아 학비지원과 동일하게 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됨.
 -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지원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국고에서 동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고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유아보육과에서 관리하게 됨.

-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이 되어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종일반이나 이후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함. 즉, 5세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기준 보육료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혹은 무상지원)이 적용됨.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종일반비 지원 또한 과감하게 적용되어야 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4. 선행연구	5
5. 용어 정리	7
II. 유아교육·보육의 행·재정 현황	8
1. 전달체계 및 행정 인력	8
2. 재정	14
3.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28
4. 기관·시설 평가 체계	33
III. 외국의 행·재정 통합 모형	43
1. 다양성을 포괄한 통합	43
2. 단선형 통합	50
3. 연령구분형 이원화 체제 I : 5+1 형	53
4. 연령구분형 이원화 체제II: 3+3 형	57
5. 시사점	61
IV.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방향의 인식	65
1. 유아교육과 보육 간 차이 및 통합 필요성 인식	66
2. 영유아 부모의 유아교육·보육 제도 차이 인지	72
3.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75
4. 통합 유형 선호	108

V. 유아교육과 보육 행·재정 통합 전략	110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타당성	110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전략 수립의 원칙	111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113
4.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중기 전략	115
참고문헌	125
부록	127
유치원 평가지표별 평가요소	129
전문가 및 기관, 공무원용 설문지	130
학부모용 설문지	137

표 차례

〈표 I-3-1〉 설문 조사 대상	4
〈표 I-3-2〉 설문 조사의 내용	4
〈표 II-1-1〉 유아교육 지원 인력 수(2010)	11
〈표 II-1-2〉 보육 지원 인력 수(2010)	12
〈표 II-1-3〉 인력의 자격요건과 1인당 담당 교사/시설 수	13
〈표 II-2-1〉 유아교육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	16
〈표 II-2-2〉 2011년 유아교육 시·도별 예산 (2011)	18
〈표 II-2-3〉 2011년 보육 예산	19
〈표 II-2-4〉 보육 정책 사업별 세부내용	20
〈표 II-2-5〉 지역교육청별 유아교육 특색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 예산	22
〈표 II-2-6〉 지방자치단체 보육 특별사업비(2010)	23
〈표 II-2-7〉 유아교육과 보육 수적 현황 비교(2010)	24
〈표 II-2-8〉 유치원 평균 교육비 및 학부모 부담률	26
〈표 II-2-9〉 영유아 연령별 월평균 보육 비용	27
〈표 II-3-1〉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치 기준 비교	29
〈표 II-3-2〉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기준 비교(2011. 7 현재)	30
〈표 II-3-3〉 실내 환경 관련 기준비교	30
〈표 II-3-4〉 조리실 관련 기준	31
〈표 II-3-5〉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 기준 비교	32
〈표 II-4-1〉 유치원 평가 영역 및 지표	35
〈표 II-4-2〉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38
〈표 II-4-3〉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비교	41
〈표 III-1-1〉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현황(2010)	47
〈표 IV-0-1〉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	65
〈표 IV-1-1〉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을 통합된 활동으로 인식하는 정도	66
〈표 IV-1-2〉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을 통합된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	67
〈표 IV-1-3〉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임’ 동의 정도	67
〈표 IV-1-4〉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으로 볼 수 없는 이유	68

〈표 IV-1-5〉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동일함’ 동의 정도	69
〈표 IV-1-6〉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69
〈표 IV-1-7〉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동일함’ 동의 정도	70
〈표 IV-1-8〉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70
〈표 IV-1-9〉 유치원/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 필요 정도	71
〈표 IV-1-10〉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관할부처 통합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72
〈표 IV-2-1〉 현행 유·보 행정 및 법 체계 차이 인지 여부	72
〈표 IV-2-2〉 현행 유·보 지원체계 차이 인지 여부	73
〈표 IV-2-3〉 현행 유·보 설치 및 운영 체계 차이 인지 비율	74
〈표 IV-2-4〉 현행 유·보 재정 지원체계 차이 인지 여부	75
〈표 IV-3-1〉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연령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76
〈표 IV-3-2〉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연령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77
〈표 IV-3-3〉 육아지원기관 적용 법의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78
〈표 IV-3-4〉 육아지원기관 적용 법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79
〈표 IV-3-5〉 육아지원기관 관할 부처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81
〈표 IV-3-6〉 육아지원기관 관할 부처 개선안 선호도	82
〈표 IV-3-7〉 육아지원기관 관리 체계 차이 개선 필요성	83
〈표 IV-3-8〉 육아지원기관 관리 체계 차이 개선안 선호도	84
〈표 IV-3-9〉 육아지원기관 장학지원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85
〈표 IV-3-10〉 육아지원기관 장학지원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86
〈표 IV-3-11〉 육아지원기관 평가체계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87
〈표 IV-3-12〉 육아지원기관 평가체계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88
〈표 IV-3-13〉 육아지원기관 담당 행정인력 수적 차이 개선 필요성	89
〈표 IV-3-14〉 육아지원기관 담당 행정인력 수적 차이 개선안 선호도	90
〈표 IV-3-15〉 육아지원기관 임대건물 허용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91
〈표 IV-3-16〉 육아지원기관 임대건물 허용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92
〈표 IV-3-17〉 육아지원기관 실외놀이터 설치기준 차이 개선 필요성	93
〈표 IV-3-18〉 육아지원기관 실외놀이터 설치기준 차이 개선 의견	94
〈표 IV-3-19〉 육아지원기관 운영일정 차이 개선 필요성	96
〈표 IV-3-20〉 육아지원기관 운영일정 차이 개선안 의견	97
〈표 IV-3-21〉 육아지원기관 입소 우선순위 제도 개선 필요성	98

〈표 IV-3-22〉 육아지원기관 입소 우선순위 제도 개선 의견	99
〈표 IV-3-23〉 육아지원기관 운영시간 규정 차이 개선 필요성	100
〈표 IV-3-24〉 육아지원기관 운영시간 규정 차이 개선안 의견	101
〈표 IV-3-25〉 육아지원기관 비용지원 기준 차이 개선 필요성	102
〈표 IV-3-26〉 육아지원기관 비용지원 기준 차이 개선 의견	103
〈표 IV-3-27〉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별 비용 차이 개선 필요성	104
〈표 IV-3-28〉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별 비용 차이 개선 의견	105
〈표 IV-3-29〉 육아지원기관 비용 규제(상한제) 차이 개선 필요성	106
〈표 IV-3-30〉 육아지원기관 비용 규제(상한제) 차이 개선 의견	107
〈표 IV-4-1〉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형 도입 적절성 선호도	109
〈표 V-3-1〉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115

그림 차례

[그림 II-1-1] 유아교육 전달체계	9
[그림 II-1-2] 보육 전달체계	10
[그림 II-2-1] 유아교육의 재원 구성	15
[그림 II-2-2] 보육의 재원 구성	15
[그림 II-2-3] 유아교육 예산의 항목별 비율(2011)	24
[그림 II-2-4] 보육 예산의 항목별 비율(2011)	25
[그림 II-2-5] 질적 수준 제고 관련 항목 예산액의 유·보 간 비교(2011)	25
[그림 II-4-1] 유치원 평가의 절차	34
[그림 II-4-2] 평가인증의 과정	37
[그림 III-5-1]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교육부 관할 업무인 모델(뉴질랜드/영국형)	62
[그림 III-5-2] 유아교육과 보육이 하나의 서비스로 융합된 모델(스웨덴)	63
[그림 III-5-3] 연령별로 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모델(덴마크 등)	64
[그림 IV-4-10]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형 선호도	109
[그림 V-4-1]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제1안 1부처 2체제)	120
[그림 V-4-2]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제2안 2부처 협력안)	1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계와 연구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바이다. 2006년 이전 유아교육학계에서는 '유아학교' 체제를 통한 보육시설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제안들이 있었고(이일주, 1999; 나정, 유희정, 문무경, 이미화, 2000), 정부 일각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7).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다수의 통합안을 제시했던 김종해 등(2005)의 학회 중심 연구를 필두로, 육아정책개발센터가(2009년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설립된 2005년 이후 유·보 통합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어 해마다 통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 2006; 문무경, 이윤진, 이세원, 2007; 유희정 외, 2008)와 협력을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이상을 현장에서부터 적용해 보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문무경 외, 2009; 문무경 외 2010)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노력이나 연구 차원의 시도를 넘어서서 정작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심을 갖고 정부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 적은 없으며, 각각의 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업무 통합에 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은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기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정책적,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0~5세 영유아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수산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제각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전달체계가 종합적 기획 하에 시행되지 못하고 유사 기능 육아 시설이 교

육 관련 부처와 복지 관련 부처로 행정이 분할됨으로써 행·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 정책추진의 현황 파악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통합적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가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두 부처(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인력, 커리큘럼, 행·재정 체계 등 3개 영역별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는 그 중 행·재정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는 현실화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통합 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사안을 나열하고 방식에 대한 포괄적 제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이옥 외, 2006),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존 정책의 현황을 시설설치·운영체계 및 재정의 측면에서 범부처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통합적 추진방안을 단기 및 중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규정과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둘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통합을 위해서는 조율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해보았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비교하고자 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적 통합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룬 외국의 경우 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조사

하고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및 기타 국가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셋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가진 고유한 특성 및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이 나아가야 할 행·재정상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과제, 우선 추진 사안 등을 단기 과제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도 등 통합 사안 등을 중기 과제로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통합에 이르기 위한 실행 방안의 구체적 추진 방법과 세부사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 및 자료, 선행 연구 등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부처별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법, 제도, 정책 자료의 수집과 내용의 비교, 차이 도출을 통해 행·재정 통합의 방법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둘째, 외국의 행·재정 통합 사례와 현행 제도들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외국의 다양한 통합과정 또는 유·보의 행·재정적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현행 행·재정 제도에 대한 의견, 통합의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전문가, 공무원, 현장 관련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첫째와 둘째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중앙 및 지방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행·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실제 기관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 시설장, 유아교육 및 보육 학계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다.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면서 유아교육측과 보육측 각각 1,000명씩으로 대상을 선정한다고 보면 다음 <표 I-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구분에 따라 표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우편조사이며 필요에 따라서

회수를 위한 조사원의 방문, 팩스 통신, 이메일 등을 같이 활용하였다.

<표 1-3-1> 설문 조사 대상

			단위: 명
	유아교육	보육	계
공무원(중앙+지방)	100	100	200
기관(원장/교사)	400	400	800
학계 전문가	100	100	200
부모	400	400	800
계	1,000	1,000	2,000

설문의 내용은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설문 조사의 내용

영역	문항내용
응답자 특성	- 집단 구분(공무원/현장/전문가/부모) -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거주지역 등) - 현직 근무 경력 - 유·보 통합에 대한 기본적 입장
유아교육과 보육 차이에 대한 인식	- 유아교육과 보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인식(교육 vs 복지) - 행·재정적 구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성 차이 인식 등
유아교육·보육 행정체계 및 법	- 이용 연령 - 관련 법규 - 관할 중앙 정부 부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보육 지원체계	- 장학지도와 조력 - 기관평가제도 - 관리 감독 및 행정 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임대건물 사용 허용 여부 - 놀이터 설치 기준 - 일일 운영 시간 차이 - 우선 입소 순위 - 연간 일정
유아교육·보육 재정	- 학비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설정 기준 - 이용 시간과 비용 결정 방식 - 보육료 상한제
외국의 유·보 통합 모델에 대한 선호	-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외국의 통합모델 사례에 대한 선호정도

넷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의 과정, 즉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종합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 소규모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아학교 모형을 제시했던 연구들, 유·보 간 상호조정 방안을 탐색했던 연구, 그리고 비슷한 취지이기는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체계화된 순차 모형제안과 실천 사례, 시범 사업까지 진행했던 연구 등 세 가지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아학교 모형의 제안

이일주(1999)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체제의 일원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학적 관점, 행·재정 지원 측면, 법규적 관점, 유아교육 체제 재구성 측면, 정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모형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3단계로 구성된 '신 유아교육 체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나정 등(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체계 모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논란을 완화하며, 모형 구현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모형을 설립과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를 파악하고, 국내외 영유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학교 모형의 현실적 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나. 유아교육·보육의 발전적 조정을 통한 통합 제안

나정 등(2003)의 연구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 차원에서 추진된 유아교

육과 보육의 개혁 방안을 범부처적 입장에서 모색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한 6개 원칙과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이 5차에 걸친 협의회, 자문회의,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는 만 0~8세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갈등해결과 협력증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방과후 교육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중해 등(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역사, 법과 제도,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과 보육이 공생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범학문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방안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체계적 통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가 출범한 후 2006년 처음으로 진행된 이옥 등(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추진 세부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법제도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부처 공무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실성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무경 등(2007)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현장에서 직접 연계하여 통합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운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다.

유희정 등(2008)의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체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기관·시설, 교사 자격, 교육·보육 과정, 관리·감독 체계, 예산 지원 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무경 등(2009; 2010)은 '09-11년까지 3개년 연구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시도청 및 교육청 등 중간 행정체계의 연계를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간 협력을 현 제도권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5. 용어 정리

본 보고서에서는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두 용어인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는 연구가 시작되고 대부분이 진행된 2011년 중반 이후까지 법적으로 공식 용어가 '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모두 보육시설로 지칭하였으나, 2011년 12월부터 영유아보육법상 용어가 '어린이집'으로 공식 변경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보고서에 이미 기록된 보육시설이란 용어를 가능한 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나 일부 문맥상의 필요성이나 편집상의 누락으로 보육시설이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바이다. 조금의 혼동이 있더라도 보고서를 읽는 독자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II. 유아교육 · 보육의 행 · 재정 현황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련한 행 · 재정적 업무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이분화 되어있다. 그러므로 행 · 재정 체계와 관련한 법 또는 제도, 정책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 간 구체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둘 간 통합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필요성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행 · 재정적 측면 즉, 기관 설치 및 운영, 평가 체계, 재정, 전달체계 및 지원인력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는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달체계 및 행정 인력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달체계 및 지원기관, 그리고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등 행정 지원 인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 전달체계

1)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 · 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고, 그에 연결된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 · 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다.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 6조에 의해 현재 육아정책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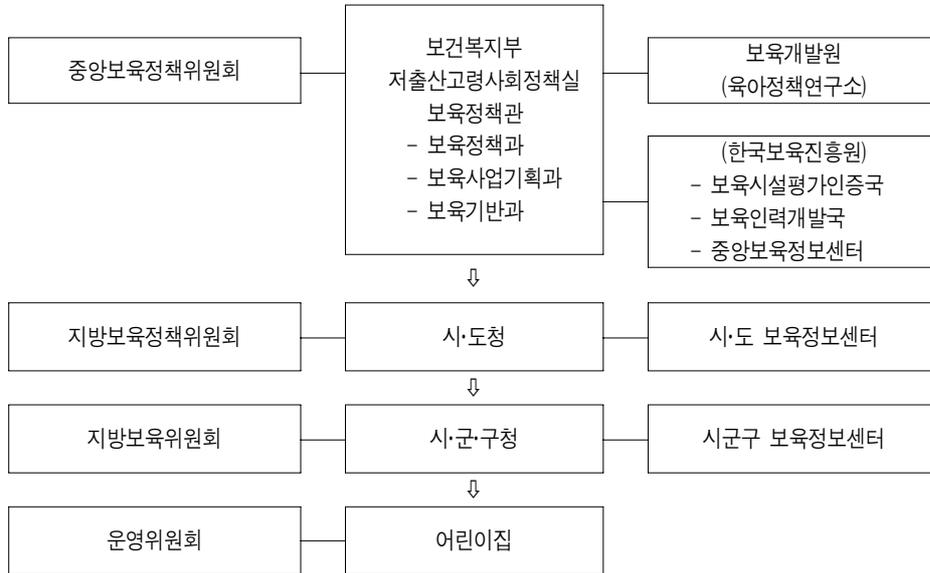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체험교육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시 · 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교육청의 업무였던 교사연수, 부모연수, 유아교육 교재 연구 등의 업무를 맡아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별로 모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림 II-1-1] 유아교육 전달체계

2) 보육

보육의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체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되는 보육개발원이 있으며, 2011년 현재 육아정책연구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보육정책 연구과 지원을 통해 보육개발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바, 소속 조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국, 보육인력개발국을 가지고 있고 위탁사업인 중앙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그림 II-1-2] 참조).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은 전국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업무를 맡아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일부 책임지고 있으며 보육인력개발국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등 종사자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내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센터로 확장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기초 지자체 일부에도 설치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평가인증 조력,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1-2] 보육 전달체계

나. 행정 및 지원 인력

유아교육 분야 행정 인력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유아교육과의 중앙정부 공무원 외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 인력을 들 수 있고, 지원 인력으로서 유아교육 지원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중앙 및 각 시도별 유아교육 행정 및 지원 인력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과 같다.

전체로 볼 때 유아교육 분야 교육청과 진흥원 근무 인력은 377명 정도이며 이는 중앙공무원 14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중앙 정부 공무원과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공무원이 총 240.5명¹⁾이고 유아교육 진흥원 인력은 136명으로 나와 있다. 두 종류 기관의 전문직 공무원(장학관, 장학사 등) 수를 합하면 18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아교육 분야에 전문 인력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1) 인원수가 소수로 나온 것은 교육청의 행정 지원 인력 중 유아교육 뿐 아니라 기타 업무를 겸임할 경우를 말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의 지원 인력은 0.5명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II-1-1> 유아교육 지원 인력 수(2010)

단위: 명

지역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총계
	전문직	일반직	계	전문직	교사	일반직	계	
전체	169	71.5	240.5	18	71	47	136	376.5
중앙	2	12	14	-	-	-	-	14
서울	20	9	29	3	16	6	25	54
부산	6	6	12	2	3	6	11	23
대구	6	5	11	-	-	-	0	11
인천	7	10	17	-	-	-	0	17
광주	3	-	3	1	15	7	23	26
대전	4	1	5	-	-	-	0	5
울산	6	-	6	4	15	3	22	28
경기	15	18.5	33.5	2	-	9	11	44.5
강원	9	-	9	2	10	5	17	26
충북	12	1.5	13.5	-	-	-	0	13.5
충남	9	-	9	2	4	5	11	20
전북	5	2	7	-	-	-	0	7
전남	25	-	25	-	-	-	0	25
경북	14	2.5	16.5	-	-	-	0	16.5
경남	23	1	24	2	8	6	16	40
제주	3	3	6	-	-	-	0	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유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통계.

보육 지원인력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 지자체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근무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1-2>는 2010년 기준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해당 실·국·과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인력과 그 외 기타인력을 모두 포괄하였다. 또한 주요한 지원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내 보육시설평가인증국과 보육인력개발국의 직원수도 포함하였다. 전국적으로 보육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766명이며 보육정보센터 인력과 기타 지원 기관의 인력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6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치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시의 '영유아 플라자'나 일부 기초지자체의 '육아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인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수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2> 보육 지원 인력 수(2010)

단위: 명

지역	중앙·지자체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한국보육진흥원		계
		센터장	전문요원	기타직	평가 인증국	인력 개발국	
전체	766	50	170	120	37	19	1,162
중앙	34	1	8	3	37	19	102
서울	56	16	61	44			177
부산	63	1	3	2			69
대구	37	1	4	-			42
인천	94	3	7	2			106
광주	13	1	4	1			19
대전	30	1	3	18			52
울산	22	1	3	1			27
경기	231	14	47	33			325
강원	53	2	5	1			61
충북	22	1	4	1			28
충남	16	1	3	-			20
전북	33	1	3	4			41
전남	12	1	3	1			17
경북	22	2	5	6			35
경남	17	2	5	2			26
제주	11	1	2	2			16

자료: 각 시도청 홈페이지: 각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다. 전달체계와 인력의 비교

전달체계를 보면, 유아교육은 교육청이 주축이 되고 보육시설은 행정 지자체가 주축이 되는 가운데, 유아교육에 비해 보육에 대한 지원 기관이 다양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에서 지원기관들이 맡은 업무, 즉 정보센터의 지원, 평가인증 업무, 인력개발 업무 등을 유아교육에서는 교육청이 모두 도맡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체계 상에서 보면, 보육이 관련 기관별로 평가, 자격검정 등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원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측면의 비교가 이루어질 있다.

유아교육 관련 인력은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유치원 교사 출신의 장기 경력자 집단인 전문직 공무원들은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 교재교구 편찬 등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는 직접적인 업무를 한다. 유치원의 교육력을 보장하는 가장 큰 임무가 이들 전문직 공무원에 있다. 앞에서 보듯이, 현재 전문직 공무원은 187명으로, 이를 교사 총 수에서 나누면 교사 195명 당 1명의 전문 멘토가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II-1-3> 인력의 자격요건과 1인당 담당 교사/시설 수

	유아교육		보육	
	전문인력 ²⁾	행정인력	전문인력	행정인력
자격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교육경력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교육경력	행정직 공무원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 후 3년 보육경력	행정직 공무원
총 인원 수	187명	107명	170명	732명
1인당 담당 교사/시설 수	교사 195명	80개원	1,094명	49개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총 107명 정도로(중앙정부 공무원 제외), 이를 기관당 인력수로 산출해 보면, 80개의 유치원을 일반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다. 시설 측면의 관리·감독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 담당 인력이 동시에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1인당 담당 기관수는 이보다는 적을 수 있다.

유아교육 지원 인력인 장학사 등 전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보육에서는 보육전문요원을 들 수 있다. 보육전문요원은 주로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며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준비에 대한 조력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이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있으나 유아교육의 장학사 자격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아교육의 장학과는 달리 보육교사가 보육전문요원으로부터 자신의 담당 반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인증 조력을

2) 「교육공무원법」 제9조와 별표1에 의하면 장학관이나 장학사 자격은 위 <표 II-43>에 나타난 조건보다 더 다양하며, 본 예시는 그 중 1번에 해당하는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만을 제시한 것이다.

보육과 관련한 전문적 도움으로 간주하고 보육교사 1인당 보육전문요원의 수를 추산해보면, 교사 1,094명당 한 명의 전문요원이 있는 셈이다.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732명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보육시설 수를 계산해 보면, 49개소 정도가 된다. 즉 지자체 공무원 1인은 평균 49개 보육시설의 관리, 감독을 맡고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과 비교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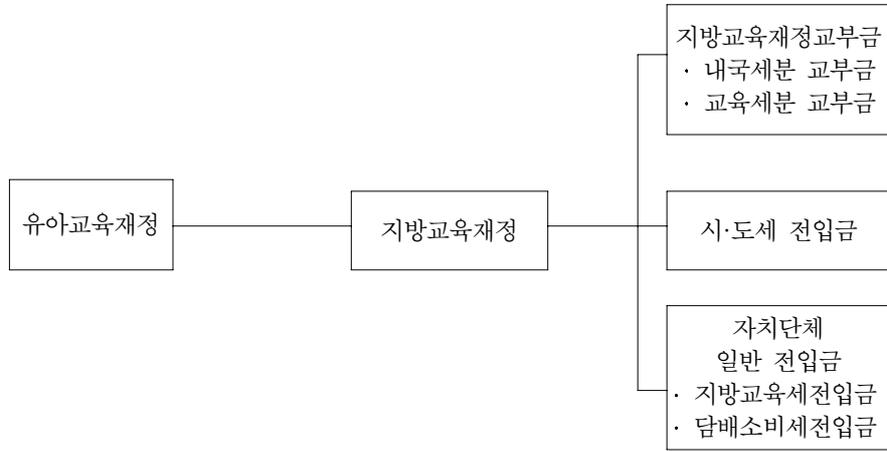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의 지원 인력인 전문직 공무원 집단이 교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질적 측면의 도움과 보육이 가진 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원의 우월한 측면이 통합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원, 정부 예산과 예산 구조를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 보자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예산의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재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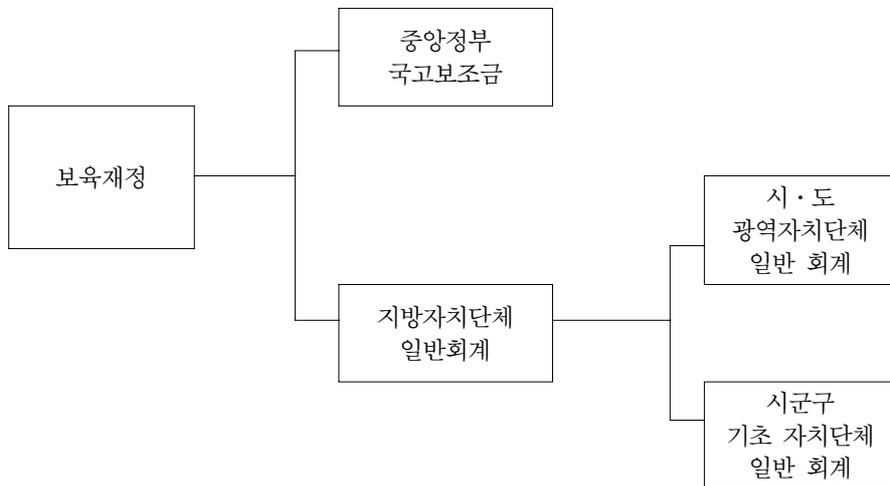
유아교육의 재원과 보육의 재원은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아교육은 2008년 이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II-2-1).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시·도세 전입금과 자치단체일반전입금이 교육재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유아교육의 재원은 유아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로서 유아교육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다.



참고: 유아교육재정 중 국립유치원 3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은 제외한 자료임.

[그림 11-2-1] 유아교육의 재원 구성

보육의 경우는 유아교육과 달리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서 재원이 구성되지 않고 일반 회계에서 독립적인 예산을 가져온다.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그림 11-2-2] 보육의 재원 구성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각각 25%가량을 충당하고 있어, 지자체 회계에서 50%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총 보육예산의 20%만 국고보조금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80%는 서울시 및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재정 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재원 구성 비율이 조금씩 차이 날 수도 있다(그림 II-2-2 참조).

나. 재정지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지출은 둘 간 예산액과 예산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예산은 크게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 예산과 지자체 특수 사업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사업

가) 유아교육

유아교육 예산은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100% 지방교육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구성되는 재원으로 여기에 시·도세 전입금과 자치단체 일반 전입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립되어 전달된다기 보다는 국가사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게 되므로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부터 해마다 예산계획을 수합하여 총괄하고 있다.

유아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은 크게 교직원운용 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또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II-2-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2-1> 유아교육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직원운용지원	공립	교원인건비	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정규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비정규직원인건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립	교원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지원 교육역량제고사업
교육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교구교재구입비 교육용로봇지원(R-Learning) 세대간지혜나눔사업(종일제교육과정지원) 기타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학력신장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희망유아교육사) 기타학력신장사업비
		교원역량강화	교원평가운영비 기타교원역량강화사업비
		수업지원장학활동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비 유치원종합컨설팅단운영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평가사업비 기타수업지원장학활동비
유아교육비 지원		학비지원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만3·4세아차등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교육비지원 저소득층유아종일반비지원 부대경비(카드수수료, 금융조회통보비)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사업비
		유아교육진흥	종일제보조인력(3세대하모니)지원 종일제유치원운영비지원 야간돌봄전담유치원운영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비 기타사립유치원재정지원사업비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신설비 적정규모공립유치원육성(통합병설)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공립병설유치원환경개선비 종일제유치원환경개선비 공립단설유치원급식시설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위에 제시되어진 각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아교육 재정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II-2-2>에서 보듯이, 유아교육재정은 총 1조 9천 2백 4십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표 II-2-2> 2011년 유아교육 시도별 예산 (2011)

단위: 백만원

지역	교직원 운용지원	교육활동 지원	유아 교육비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계
서울	50,335	4,746	79,636	43,486	178,203
부산	18,051	3,689	80,411	5,956	108,107
대구	14,208	1,102	50,505	10,198	76,013
인천	20,270	1,618	49,696	8,934	80,518
광주	18,032	1,013	28,484	6,165	53,694
대전	16,294	1,547	41,391	2,480	61,712
울산	12,916	1,132	23,650	4,489	42,187
경기	233,913	3,083	151,392	39,971	428,359
강원	35,341	4,853	28,105	12,793	81,092
충북	35,791	1,552	24,033	24,177	85,553
충남	36,418	2,807	31,389	18,304	88,918
전북	137,382	444	33,462	27,761	199,049
전남	58,925	2,008	30,876	15,821	107,630
경북	60,618	10,150	60,950	11,130	142,848
경남	55,843	6,506	72,708	31,854	166,911
제주	10,807	737	8,320	3,245	23,109
총합계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비율	42.4%	2.4%	41.3%	13.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유아교육예산. 내부자료.

사업별로는 교사인건비인 교직원운용지원이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다음은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41.3%를 차지한다. 이 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수로, 유치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13.9%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장학이나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활동지원에는 2.4%정도가 포함되고 있다.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지원 사업에는 공·사립유치원운영지원비, 공립유치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비, 유치원환경개선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쓰이는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즉, 인건비와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교육활동이나 여건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유아교육 예산의 16.3%인 313,751백만 원 규모이다.

나) 보육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함께 고려해야 전체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주어진 <표 II-2-3>의 예산액은 중앙정부 국고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총 국가예산을 보여준다.

<표 II-2-3> 2011년 보육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육 시설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 시설 평가 인증	보육 시설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계
서울	142,434	518,890	3,500	860	-	6,539	24,136	696,359
부산	49,864	218,537	1,476	489	-	2,448	14,289	287,103
대구	39,706	199,817	742	475	-	1,715	15,505	257,960
인천	25,011	232,153	354	467	-	2,019	13,457	273,461
광주	25,409	166,340	402	426	-	1,149	7,422	201,148
대전	14,609	141,341	158	417	-	1,734	9,140	167,399
울산	15,231	73,906	123	403	-	1,141	3,648	94,452
경기	124,665	981,622	4,051	1,685	-	12,372	34,457	1,158,852
강원	40,048	116,651	1,834	399	-	1,859	5,743	166,534
충북	36,491	129,449	2,176	443	-	1,642	6,632	176,833
충남	47,516	165,160	1,361	461	-	2,523	7,752	224,773
전북	53,236	183,039	1,433	598	-	1,849	10,212	250,367
전남	61,490	164,775	1,972	1,087	-	2,004	8,094	239,422
경북	44,446	227,573	1,423	592	-	3,287	11,259	288,580
경남	61,207	312,610	1,728	504	-	4,011	11,832	391,892
제주	32,276	71,608	564	408	-	1,317	3,325	109,498
국비 추가				10,342	4,975			15,317
계	813,639	3,903,471	23,297	20,056	4,975	47,609	186,903	4,999,950
비율%	16.3	78.0	0.5	0.4	0.1	1.0	3.7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육사업안내; 2011 보육예산. 내부자료

보육사업 국가 총예산은 약 5조에 이른다(표 II-2-3 참조). 각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78.0%로 예산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운영지원 항목으로 예산의 16.3%가 투입되고 있어 이들 두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4.3%가 된다.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주어지는 영유아보육비 지원액이 많은 부분 해당 기관내 종사자의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보육예산의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포함되는 '보육인프라구축'이나 교재교구비 지원이 포함된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항목은 예산 중 2%정도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4>에는 예산 수립시의 보육정책사업 구분과 각각의 세부내용이 나타나있다. 보육사업의 하위 정책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육인프라구축,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7개 사업이 있다. 앞서 살펴본 유아교육 예산의 항목 구분과 비교해보면 내용은 비슷하나 예산항목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고, 보육인프라구축 사업 항목을 보면 종사자보수교육이나 보육프로그램개발, 종사자자격관리,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교육 예산에 비해 특히 다른 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비지원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2-4> 보육 정책 사업별 세부내용

정책사업	세부내용
보육시설운영 지원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 국공립·법인 · 영아, 시간 연장 등 · 대체교사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 0~4세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 만5세아무상보육 - 장애아무상보육 - 맞벌이가구 보육 - 다문화 보육료 추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 신축 국공립, 장애전담 - 공동주택리모델링

정책사업	세부내용
보육시설 기능보강	- 기자재구입 - 환경개선비지원 - 장애아보육환경개선
보육인프라 구축	- 보육사업관리 -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보육전자바우처운영 -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보육시설평가인증	-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보육시설지원	- 보육시설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차량운영비 지원(20만원/월) - 공공형보육시설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차상위 36개월 미만(20~1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육사업안내.

2) 지자체 특수 사업지원

국가가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정부 주도 사업들 이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별 특수 사업들이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 예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자체 특수 사업에 따른 예산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자료의 성격상 2011년 예산은 지역별로 모두 수합이 어려웠으므로 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가) 유아교육

먼저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별 특색사업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특색사업과 일부이긴 하지만 시·도청 등 지자체에서 유치원이나 교육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II-2-5>를 보면, 각 시·도 교육청별 특색사업 예산은 총액으로 볼 때 9백 억 정도이며, 여기에 행정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 약 2백4십억을 합치면 1천 1백 4십억 정도로 나타나

있다. 즉, 국가 주도 유아교육 사업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은 천백억이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시도 교육청 외에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의 특색사업도 있으나 이는 시도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고, 지자체별 지원액을 보면 지역별로 매우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지원액이 높은 편이지만 대전이나 제주, 광주 등은 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2-5> 지역교육청별 유아교육 특색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청 특색사업	시·도청 지원사업	계
서울	10,255	7,705	17,960
부산	7,146	2,430	9,576
대구	1,118	100	1,218
인천	2,600	1,958	4,558
광주	1,002	2	1,004
대전	50	0	50
울산	1,123	161	1,284
경기	14,097	5,296	19,393
강원	2,512	153	2,665
충북	0	215	215
충남	6,436	137	6,573
전북	12,137	55	12,192
전남	7,939	1,777	9,716
경북	13,602	905	14,507
경남	8,051	3,356	11,406
제주	1,679	0	1,679
계	89,747	24,250	113,994

출처: 김은설 외(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시교육청·충남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나) 보육

보육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특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있다. 전국 총괄 예산액이 6천 5백 4십 8억으로 집계되어 유아교육보다는 6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시도 보육 특별사업으로는 시설운영지원, 종사자지원, 기능보강, 평가인증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인건비나 보육료지원이 일부 있으나 종사자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등 국고지원 보육사업 이외에 보육의 환경이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방 재정이 보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다.

〈표 II-2-6〉 지방자치단체 보육 특별사업비(2010)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특별사업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계
서울	189,227	63,564	252,791
부산	13,056	915	13,971
대구	9,112	1,798	10,910
인천	30,838	5,266	36,104
광주	6,525	410	6,935
대전	15,913	908	16,821
울산	7,546	1,953	9,499
경기	118,591	53,075	171,666
강원	5,837	2,729	8,566
충북	6,212	10,722	16,934
충남	17,849	3,839	21,688
전북	16,351	2,632	18,983
전남	2,048	4,160	6,208
경북	18,642	9,530	28,172
경남	16,623	9,799	26,422
제주	9,157	-	9,157
계	483,527	171,298	654,825

출처: 서문희 외(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의 비교

유아교육은 3세 이상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반해 보육은 0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전연령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예산을 근거로 한 사업규모에 있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앞서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아교육 예산이 2조가 채 못 되는데 반해 보육 예산은 거의 5조에 이른다.

또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연령은 돌보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차이를 가져와 영아에 대한 보육교사의 필요 수가 높아 보육교사 수를 2010년 통계로 185,900명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유치원 교사수의 5배가 넘는 규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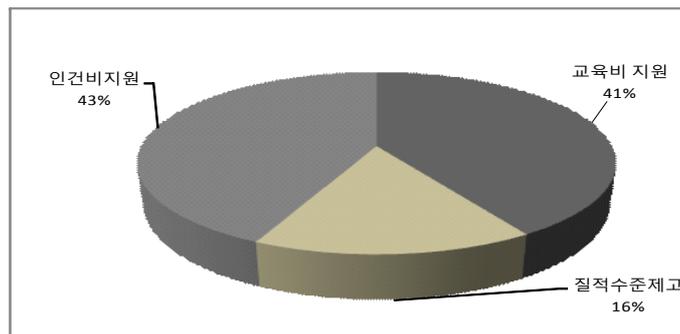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활용 구조에서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즉 순수하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들, 말하자면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지원, 장학,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이나 기능보강에 쓰이는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은 매

우 미미하며 특히 보육이 더욱 심하다. 비율이 아닌 예산액수를 비교하더라도 유아교육측 예산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그림 II-2-3]과 [그림 II-2-4]를 비교해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 조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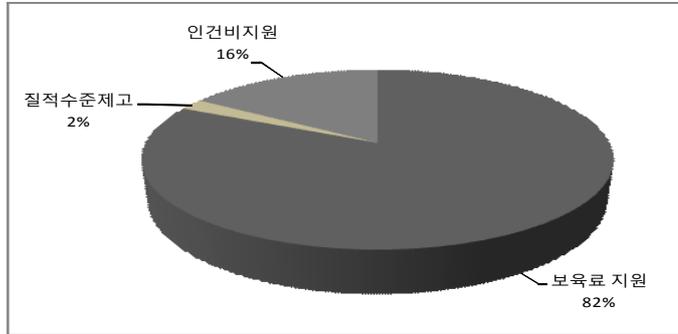
<표 II-2-7> 유아교육과 보육 수적 현황 비교(2010)

구분(단위)	유아교육	보육	비고
등록 아동 수(명)	538,587	1,175,049	보육이 2.2배
교사 수(명)	36,461	185,901	보육이 약 5배
시설 수(개)	8,388	35,550	보육이 약 4배
국공립 시설 수(개)	4,501	1,917	유치원이 2.3배
국공립시설 등록 아동 수(명)	126,577	129,656	거의 비슷
예산 총액(백만원)	1,923,903	4,999,950	보육이 2.6배
아동 1인당 예산(천원)	2,258	4,207	보육이 1.9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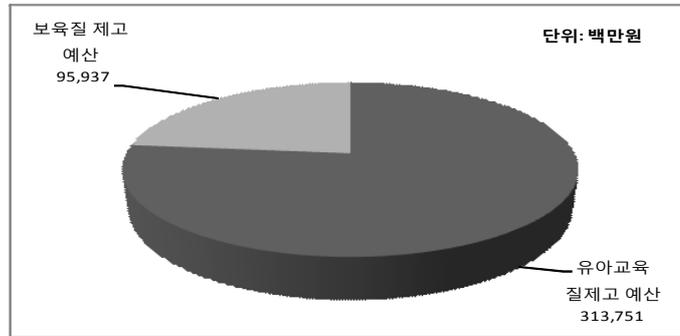
[그림 II-2-5]은 인건비와 교육비·보육료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액을 교육과 보육 각각 질 제고를 위해 충당되는 비용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하는 항목에 배당된 예산의 액수를 비교하는 그림이다. 보육은 유아교육에 비해 국공립 시설의 수가 절반도 안 된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 국공립 유치원에 투입되는 질제고 비용이라고 보면 유아교육에서 이 항목 비용이 보육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수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상호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육의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3] 유아교육 예산의 항목별 비율(2011)



[그림 11-2-4] 보육 예산의 항목별 비율(2011)



[그림 11-2-5] 질적 수준 제고 관련 항목 예산액의 유·보 간 비교(2011)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 아동 당 질적 수준 제고 관련 예산의 비용을 산출해보면, 유아교육은 582,545원이고 보육은 81,645원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이 영유아들 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시설환경개선이든 지원기관에 대한 투자이든 결국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라고 보면 아동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유·보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이 교육적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보육을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아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으로써 이러한 차이가 당연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두 분야 모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부모의 비용 부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유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교육비 또는 보육료가 갖는 가장 큰 차이는 유치원은 학비를 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익자 부담 구조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제'라고 하여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상을 부모에게 부담지우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어린이집이 복지시설로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의 경우 최근 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따르면, 유치원당 납입금의 전국 평균은 31만 4천원으로 나와 있다(김은설 외, 2010). 이를 16개 시·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 서울의 경우는 최고액인 55만 4천원이 납입금이고 경기도가 다음으로 46만 9천원정도이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이 많은 도 지역들을 보면 전남이 최하액인 12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충남이 14만 2천원, 전북이 14만 3천원 등으로 낮은 편이다.

다음의 <표 II-2-8>는 유치원이 보고한 교육비를 각 시·도 교육청별로 취합하여 정리한 자료로, 유치원 교육비 평균과 이를 활용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 비율 및 국가 부담비율을 같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보면,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77.7%인 것으로 나왔고 이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학부모 부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0.5%가 부모부담으로 지워져있고, 이에 비해 전라북도는 부모부담이 40.0%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II-2-8> 유치원 평균 교육비 및 학부모 부담률

단위: 천원, %

구분	유치원 납입금	정부 부담률	학부모 부담률
전체	314	22.3	77.7
서울	554	9.5	90.5
부산	440	22.6	77.4
대구	374	25.5	74.5
인천	425	18.9	81.1
광주	298	28.5	71.5
대전	329	25.6	74.4
울산	343	20.4	79.6

구분	유치원 납입금	정부 부담률	학부모 부담률
경기	469	12.0	88.0
강원	159	46.3	53.7
충북	153	43.2	56.8
충남	142	39.7	60.3
전북	143	60.0	40.0
전남	120	56.4	43.6
경북	145	56.4	43.6
경남	208	38.2	61.8
제주	149	45.8	54.2

출처: 김은설 외(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시교육청·충남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비용은 2009년에 이루어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바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 전연령 평균 비용이 30만 9천원 정도로 나왔다. 이는 유치원보다 5,000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물론 순수한 보육비만을 생각하면 24만 7천원 정도이나 추가 비용으로 6만 2천 원 정도가 더 부가되어 총 비용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해당 연령인 3~5세의 보육료만 비교하게 되면 차이는 더 커진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면 평균 지불 비용은 상당히 낮아져 16만 8천원이 되고 다시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또한 차이가 있다. <표 II-2-9>는 연령별 보육료를 보여주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있는 경우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보육료에 대한 국가 부담률 또한 알 수 있다.

<표 II-2-9> 영유아 연령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정부 부담률
전체(미지원아동)								
총비용	329.8	329.9	318.4	294.8	292.4	307.4	308.6	
순보육비	296.8	302.0	262.6	233.7	207.9	217.0	246.8	
(수)	(8)	(55)	(114)	(99)	(65)	(48)	(389)	63.7%
전체(지원 아동)								
총비용	116.5	157.3	175.5	180.9	179.2	144.9	168.1	
순보육비	101.9	132.6	129.3	120.5	110.3	75.0	114.3	
(수)	(45)	(178)	(329)	(317)	(256)	(217)	(1,342)	

출처: 서문희 외(2009).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외(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앞서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비용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각각 22.3%와 63.7%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둘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간 재정 면에서의 통합은 그들이 서로 재원의 흐름이 다르고 재정지출의 구조가 달라서 둘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점이 예상된다. 유아교육 재정은 전체 교육재정의 일부로서 교육교부금의 형태에 의존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므로 보육의 일반회계 체제와 조정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재원체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즉, 유아교육이 교육청 전달체계에서 떨어져 별개로 나오든지 보육이 교육청 체계로 들어가는지의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의 문제에서도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위탁하여 인건비의 30~80%를 지원하며 운영해가고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면에서의 통합을 생각한다면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3. 기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가. 설치 및 시설기준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다르며 각 영역별로 다른 법령과 기준들이 혼합되어 있다. 유치원은 대통령령에 제시된 유아교육법에 의해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어 각 설치기준을 충족할 때 시·도 교육감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설립은 보건복지부령에 제시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어 각 기준을 충족시킨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설치가 가능한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표 II-3-1〉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치 기준 비교

설치기준법령	유치원	보육시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관련 법	1. 유아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병설유치원설치)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교사, 실외놀이터 기준 면적	영유아보육법
설립유형 구분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설립·폐쇄인가 (국공립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유치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는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사면적, 이나 실외놀이터, 급·배수시설, 온수시설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교실 내부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설립 및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위생, 안전, 실외놀이터 관련 기준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놀이터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놀이터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반해,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내 체육장 기준에 포함되어 적용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공동주택 내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표 II-3-2〉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기준 비교(2011. 7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사 면적(㎡)	- 5N(40명 이하) - 80+3N(41명 이상)	4.29N 이상(놀이터 제외)
시설임대	불허	제한 없음
시설처분	매도·담보제공 금지	제한 없음
설치위치	- 1, 2층 원칙 - 200m내 유해시설 없는 곳.	- 1층 원칙(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하에 2-3층 설치 가능) - 50m내 유해시설 없는 곳.
실외놀이터 (체육장)	- 160㎡(40명 이하) - 120㎡+N(41명 이상)	3.5N로 옥외 놀이터 원칙 *50인 미만, 영아위주 보육시설 제외
교실· 보육실 내부환경	- 교실의 내부환경 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 연령구분 없이 영유아 일인당 2.64 ㎡이상(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침구, 놀이기구, 교재교구 구비 -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적정유 지관리 - 바닥 난방시설

유치원의 교실을 제외한 기타 실내 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급·배수 시설 및 온수시설(목욕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3-3〉 실내 환경 관련 기준비교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영유아보육법
급·배수 시설	- 급수시설 구비기준 - 수질 검사 필수	- (간이)상수도, 저수지 관련 내용 - 더러운 물, 빗물 배수설비 내용
온수시설	- 온수공급 시설 구비	- 목욕실 필수 설비 내용 : 난방, 미끄럼 방지장치 등

유치원의 조리실에 대한 부분은 유아교육법에 명기되어 있어 모든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에는 구체적으로 조리실에 필수 설비기준과 영양사 관련 운영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령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조리실 설비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조리실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적용되고 있다.

〈표 II-3-4〉 조리실 관련 기준

관련법	유치원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령(조리실 운영기준)
조리실 설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설비기준 - 교차오염 방지 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 원칙 - 내부벽, 바닥 및 천장 재료 및 재질에 대한 기준 - 조리실 필수 설치 설비 (출입구, 창문 방충망 등) - 조명, 냉방기준 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설비기준 - 조리실 필수 설치 설비 (환기시설, 식기소독 등)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공동 사용 - 보육시설 직접 조리공급 원칙
조리실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 - 5개이내 유치원 공동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고 위생적, 안전한 급식 제공 - 급식관리 영양사 관리 기준 제시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소방법에서 제시하는 방화, 방염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받고 있다. 다만 보육시설은 소방법 이외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등 안전관련 법 적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치원보다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는 화장실 내에 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세정 장치, 수도꼭지 온도조정 고정 장치 등 필수 시설에 대한 기준이 보다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나. 운영

각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은 교육을 위한 “학교”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격이 강하며, 보육시설은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시설” 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도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영아가 아닌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보육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영유아를 포함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한 12세 아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은 기관시설에 우선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보육시설은 취약계층 자녀에게 기관이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복지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

<표 II-3-5>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 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성격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 “시설”
서비스 대상	만3세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0-5세 취학전 아동, 12세까지 연장가능)
취약계층 우선권 부여	-	1. 기초생활수급자 2. 편부모 자녀 3. 차상위 계층 자녀 4. 장애아 5. 근로자 자녀
학년도	-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 -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운영 지역에 따라 유연성 부여	구체적인 기준 없음 (일반적으로 1월에 모집하며, 기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기준 없음 (권고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원장 재량 - 취약보육 우선 보육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육시설 의무화

또한 유치원은 보육시설과 달리 법령에 학년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3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진행하게 되며, 방학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법령에 정확한 입학날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방학이라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령기준 차이로 인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날짜가 상이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행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작년부터 각 유치원에 권고사항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초

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어 향후 운영위원회 법령마련시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장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부 취약보육시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해 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되어 있다.

4. 기관·시설 평가 체계

유치원은 2011년 현재 제2주기 평가가 시작된 시점이고 보육시설 또한 2006년부터 시작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따라 제2차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절에서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의 방식과 평가 내용 및 활용 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 1주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11년은 제2주기 평가의 1차년도로 이 또한 3년간 지속될 것이다. 제1주기 유치원 평가에서는 99.8%에 이르는 유치원들이 참여하여 (장명림 외, 2010) 평가를 받았으므로 거의 모든 유치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유치원 평가는 교육과정 내실화와 종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와 유치원간 선의의 경쟁 촉진 등을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 유치원 평가의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평가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 지역정책에 맞는 자체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 연수 등을 진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통지표 제공, 평가위원 연수 지원 등 평가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치원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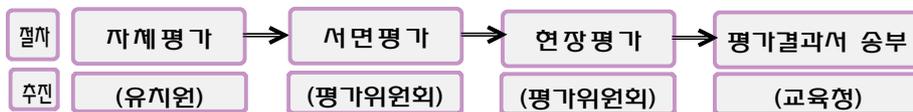
1) 평가 시행의 근거, 대상 및 주기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평가는 국·공·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전체 유치원의 1/3씩 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주기는 3년이다.

2) 평가 방법

유치원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를 보면, 유치원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위원회는 시·도 교육청이 대학교수, 유아교육전공 교원, 퇴직 교원, 타 시·도교육청 교원 등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중앙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받는 자체평가보고서와 유치원 운영계획서를 서면평가(사전평가)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관찰과 면담 중심의 평가로 진행하며 유치원의 운영 진단과 개선이 목적이므로 상대평가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평가결과서가 교육청으로 송부되게 된다.



[그림 11-4-1] 유치원 평가의 절차

유치원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와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체로 점수공개나 서열화는 지양하고 우수사례 일반화와 홍보에 주력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된다.

3) 평가 영역 및 내용

제2주기 유치원평가의 평가 영역 및 내용은 공통지표와 자체지표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자체지표는 시·도 교육청의 역점 또는 특색사업을 활용할 수 있

다. 평가 영역은 ①교육과정, ②교육환경, ③건강·안전, ④운영관리 등 네 가지 이고 이는 다시 9개 항목 15개 지표(47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평가 공통지표는 다음 <표 II-4-1>과 같고 평가 지표별 하위의 평가요소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4-1> 유치원 평가 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
I. 교육과정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2.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 활용	3.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4.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하며,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5.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II. 교육환경	실내·외 교육환경의 구성 및 관리	6. 실내·외 공간 구성 및 시설·설비가 유아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한가?
	교재·교구의 구비 및 제공	7. 유아의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제공·관리하고 있는가?
III. 건강 및 안전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8. 유아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설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9. 유아 영양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10.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IV. 운영관리	교직원의 인사·복지 및 전문성	11. 교직원 인사·보수·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12.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3.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가정·지역사회 연계 및 종일반 운영	14. 다양한 부모교육·참여활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15. 종일반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이 적절한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2013 제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내부자료.

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유치원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제도로 평가인증제를 가지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9년 제1차 시행이 완성되었고, 2010년부터 제2차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시행 시기 하반기였던 2009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86.8%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9a).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둘째,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하며, 셋째,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1) 평가인증 시행의 근거, 대상 및 주기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자가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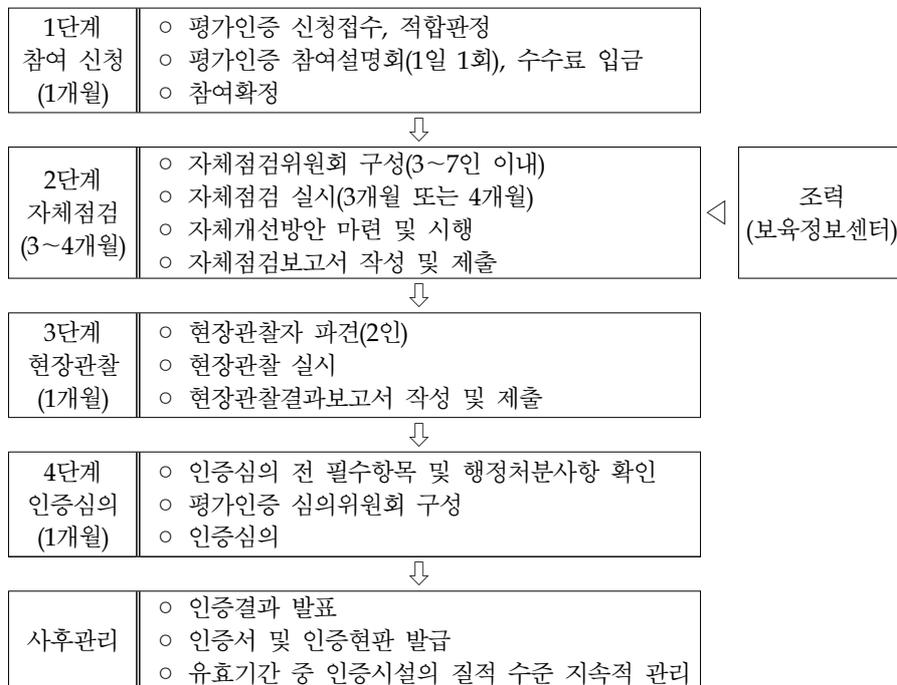
평가인증의 대상은 모든 형태의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법인, 단체, 가정, 직장, 부모협동 등)이 포함되며, 평가주기는 3년으로 매년 4기로 나누어 운영된다.

2) 평가인증 방법

평가인증은 참여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사의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참여 신청 과정으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참여를 신청한 이후에는 적합판정, 참여설명회, 참여수수료 납부, 참여

확정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 과정이 진행된다. 2단계는 자체점검 과정으로, 자체점검이란 참여설명회 참석을 마친 보육시설에서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전반을 점검, 개선방안을 실행해 가는 과정이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모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를 조직하여 3-4개월 동안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에 기입하고 (재)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국에 제출한다. 2단계에서는 보육정보센터에 조력을 신청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 II-4-2] 평가인증의 과정

제3단계는 현장관찰로, 현장관찰자 2인이 각 보육시설에 파견되어 하루 종일 관찰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현장관찰자는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동일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교사 3년 포함)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형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교육훈련을 수료하도록 요구된다. 상시와 비상시 근무자로 구분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인증심의 단계로, 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은 학계 전문가, 보육현장 종사자, 평가인증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및 심의위원회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평가인증결과는 인증, 인증유보로 구분되며, 인증유보시설은 단기간 내 재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발급되고 이후 연차별 자체점검, 교육 및 방문지원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평가인증 영역 및 내용

평가인증지표는 보육시설의 형태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40인 이상 보육시설용 지표, 39인 이하 보육시설용 지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용 지표 등이 그것이다. 3종의 각 지표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영역에 따른 하위 영역도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대표적으로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지표 수가 가장 많은데 6개 영역에서 70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6개 영역은 ①보육환경, ②운영관리, ③보육과정, ④상호작용과 교수법, ⑤건강과 영양, ⑥안전 등이다. 구체적인 관련 하위 영역은 다음 <표 II-4-2>과 같다.

<표 II-4-2>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영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1항목)	가. 어린이집 환경 (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2항목)	가. 어린이집 운영관리 (3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http://kca.childcare.go.kr/cais/content/>

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비교

앞에서 각각 살펴본 유치원 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몇 가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유치원 평가는 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인데 반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평가를 통한 '인증'을 하고 인증현판을 걸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 모두 대상 기관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기관의 성격상 유치원은 일반 학교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기관을 홍보하는 정도에서 결과를 활용하지만, 보육시설은 과거에 인가가 아닌 신고제 하에서 많은 수의 시설, 특히 민간 시설이 설치된 결과 설치기준이 미흡하였음을 고려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기존 연구를 보더라도 평가인증은 현재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고 이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증제는 최하 기준선만 있고 그 이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점에서는 부족한 제도이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평가인증제를 점수화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들이 있고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도 있다(서문희 외, 2010b).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된 상황이 될 가까운 미래를 두고 장기적으로 볼 때 평가인증은 점차 평가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의 결과를 우수와 미흡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이 평가에 대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평가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평면적인 결과 활용보다는 보상의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이 유치원 평가는 행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시·도 교육청인데 반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업무 위탁처인 (재)한국보육진흥원 내 평가인증국 즉, 별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유치원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경우는 시·군·구청이 인가하고 평가인증은 전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로 별도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보육시설 할 것 없이 뉴질랜드는 교육부나 복지부 등과는 무관한 또 다른 부처(‘공공서비스부’)에 소속된 평가기관에서 초·중고 학교평가와 더불어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또한 ‘교육표준청’에서 평가를 하고 스웨덴도 비슷한 경우이다. 즉, 인가와 지원 등 주관 관련 정책 업무를 맡아보는 행정 기관과는 별도로 평가 업무 담당 독립 기관을 둬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추구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평가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청은 교육 외 기타 정책 업무를 하지 않는 독립된 행·재정 체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외국의 경우와 완전히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든 인가와 관리, 감독, 장학에 주도하는 곳에서 평가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심사자가 두 제도는 다르다.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평가위원 3~5명이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훈련받은 경력 5년 정도 2명의 현장평가자와 그 결과를 심의하는 전문가 3인 심의위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서면심의가 최종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유치원 평가의 경우처럼 현장평가와 최종 심의자가 일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은 그 수가 3만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 현장관찰자를 고용하여 심의자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수가 많음을 고려하여 평가 인증이 아닌 기관 평가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전수 평가가 아니라 지역과 설립유형 구분에 따른 표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표치로 활용하여 적용한다면 현장관찰자와 심의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수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를 비교하면, 영역구분이나 세부 항목의 구분에서 차이가 있는 듯 보이나 내용상의 비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평가인증(40인 이상 시설) 지표는 6개 영역으로, 유치원 평가에는 없는 상호작용 및 교수법이 포함되어 있고 유치원 평가에는 ‘건강 및 안전’으로 된 영역이 평가인증에서는 ‘건강 및 영양’, ‘안전’으로 구분되어 있어 2개 영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치원 평가지표의 한 단계 아래 항목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및 평가’가 있고 ‘가정·지역사회 연계’라는 항목

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항목 하에도 영양관리와 교육, 위생적 관리가 들어 있어 지표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4-3>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비교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교결과
목적	- 질적 수준 제고 - 유치원운영관리시스템개선 - 원장의 역량 제고 - 학부모 유치원 선택권확대 - 유치원간 경쟁 촉진	- 보육서비스 질제고 - 시설장·보육교사 전문성 증진 - 부모의 합리적 시설 선택 - 정부의 지원, 관리체계확립	거의 동일
시행근거 (부처)	유아교육법 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보건복지부)	차이 있음
시행주관	시·도 교육청	위탁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차이 있음
주기	3년	3년	동일
평가자	평가위원회	현장관찰자 + 심의위원회	차이 있음
평가절차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결과서 교육청 제출	참여 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 심의	거의 동일
현장평가 방법	-평가위원 3~5명 (분야 경력 10년 이상) -1일 6시간 관찰, 면담	- 현장관찰자 2명(분야경력 기본 5년 이상) - 1일 온종일관찰	차이 있음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접수공개 지양 -질제고 피드백자료로 활용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차이 있음
평가영역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세부 지표 비교 시 차이가 줄어듦.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 그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상의 차이도 볼 수 있는데, 유치원 평가 지표에는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가'라는 내용과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로운가'라는 지표가 있으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에는 상호작용 영역 하에 영유아의 낮잠이나 영아의 기저귀 갈기, 교사의 언어 태도 등 일상적 양육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평가하는 내

용이 여러 항목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두 기관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점차 역할이 비슷해져 가고 있음을 점을 생각하면 두 평가 지표는 완전히 다르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 속에서 통합 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아가 보육시설에 있으므로 평가 내용의 통합은 유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Ⅲ. 외국의 행·재정 통합 모형

OECD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정부차원의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OECD, 2006). 그러나 각 국가는 지향하는 가치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역사, 정책 방향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통합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노력과는 달리 통합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하거나(예를 들면, 일본) 일부 영역에서만 통합되는(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교사자격 통합)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미 선행 연구들(이옥 외, 2006; 유희정 외, 2008)에서 소개된 바가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국가별 통합 모델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인력이나 교육과정 등 통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들은 타 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행정 및 재정의 통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몇몇 국가의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들여다보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 행·재정 관리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교육부처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모두 관할하는 뉴질랜드나 영국식의 통합형 모델이고, 둘째는 교육부처 관할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유치원, 보육시설 구분과는 차이가 있는 일체형 육아지원 기관을 관할하는 스웨덴식의 일체형 모델이다. 셋째는 5세까지는 보육 중심으로 복지부처에서 통합된 보육시설을 관할하고 6세가 되면 교육부처 소관인 1년 기한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형태의 모델로 여기에는 덴마크와 핀란드가 속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프랑스와 독일이 속하는 형태로, 3세를 기준으로 아동이 다니는 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정해져서 연령별로 구분되어 각각 복지부처와 교육부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본 장에서는 각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다양성을 포괄한 통합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관 유형을 그대로 두고 행·재정

적 관할 업무는 교육관련 부처 한 곳에서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모델은 원래 유치원은 교육부에, 보육시설은 복지부에 관련 업무가 소속되어 있다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로 보육 업무가 이양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후에 우리나라가 하나의 부처로 업무를 몰아주는 형태의 통합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초기에는 이러한 모델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며, 그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 모델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로 뉴질랜드와 영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뉴질랜드

1) 관할 행정 부처

뉴질랜드는 다양한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업무 소관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한 부처로 통합된 것은 1986년 정부의 부처 간 전격적 업무 이관 이후의 일로, 이전까지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지원과 관리 책임은 교육부, 사회복지부, 원주민 마오리족 담당부 등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986년에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이후 10년간 꾸준히 관련 영역 즉, 인력양성, 교육과정 통합, 인건비 동일화, 아동 지원 동일화 등 각 사안별로 정책을 세우고 차례로 진행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완전한 행재정 통합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통합을 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김은설, 김문정, 2010).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대한 평가는 초중고 학교 평가를 진행하는 교육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 ERO)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RO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산하 기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교육부와는 독립적인 타 부서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영유아지원과 관련한 뉴질랜드의 주요 정책으로, 주 20시간까지 교육·보육 서비스를 3-5세 모든 유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2) 통합의 과정

뉴질랜드 정부는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보육서비스 관련 법적 의무 이

전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합동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5년 12월 교육부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열린 보육과 교육에 관한 공개토론포고서에 의하면, 두 장관은 행정서비스의 이전에 관해 1986년 7월까지 이전 및 변경 법안을 공시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 정부예산 조정을 결정하였다.

이후 실무 회의에서 전달체계, 재정보조, 교원연수, 자문 및 지원, 관리, 지역 사회의 요구 등 사안에 합의하기 위해 토론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보육 서비스 이전 시 인력확충과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교육부 내 보육시설 담당 공무원 충원 등을 합의하고 진행하였다.

1986년 초, 교육부로의 이전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 교육부 관할 하에서 모든 보육과 교육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에 전적으로 사회복지부가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동의하여 법안이 제출되고 통과되었다.

교육부에서의 보육 공무원들, 보육 관련 서류, 재정보조의 이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공명정대하게 다루어져야 함이 우선 사안이었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을 위한 재정보조와 교사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교사 양성문제는 1985년 5월 ECEC 분야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일주일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

- 보육과 유치원 교사교육 연한 통일
- 교원양성 방법에서부터 필요한 교원자격까지의 교원행정 통합
- 연수과정에 대한 핵심 교과 과정 통합
- 다양한 교사 연수를 위한 재정보조의 형평성
-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한 급여의 형평성

3) 서비스 유형

현재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육아지원서비스에는 유치원, 놀이 센터, 보육시설(education and care), 가정보육서비스(home-based services), 통신 학교(the Correspondence School), 원주민 육아센터: 코항가 레오(kohanga reo) 등 모든 교육·보육 서비스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발적 참여와 기금으로써 비정부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 지원 시설은 별도로 있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유

치원은 거의 주(州) 법령(1988)에 적용을 받아 정부가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협상하는 공립 기관이다. 즉 정부는 ECS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만 서비스 기관 자체를 운영하지는 않고, 위원회, 이사회, 소유자 단체 등이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기관 유형과 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보육시설(Home-based service)이 있다. 영유아 교사 자격이 있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서 가정시설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를 채용하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Education and Care)이 있다. 0-4세 및 소수의 5세(※뉴질랜드는 5세 취학)가 이용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ECE) 기관으로, 민간 서비스나 비영리 지역사회 설립 등 소유자 및 관리자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상업적이고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도 하며, 몬테소리와 같은 특수한 특성을 지닌 협회와 제휴하기도 한다. 회기로 운영하는 곳, 종일 운영하는 곳, 시간제로 이용하는 곳 등이 있다.

셋째, 유치원(Kindergartens)이다. 3-4세 유아들을 위한 기관으로, 주로 회기를 두고 운영한다.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자이고 지역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반일반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97%) 유아가 주 20시간 이하 이용함으로써 전액 지원을 받고 있다.

넷째, 놀이센터(Playcentres)가 있어, 부모협동, 회기별 운영,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등록 영유아의 부모들이며, 지역 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다섯째, 사립 초등학교 부설 유아학교 교실 (pre-school classes)도 있다.

여섯째,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가 제공하는 영유아 서비스가 있다. 이는 주립 통신 학교가 제공하는 원거리 유아 교육 서비스이다. 통신학교는 장거리, 질병, 장애, 특별한 환경 등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등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장거리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곱째, 마오리 원주민 센터(Nga kohanga reo)가 있어, 마오리족 원로들이 관할하고 마오리족 언어로 운영하는 언어로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보육 센터이며,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영유아들의 부모나 부족 원로들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의 보육시설(Casual Education and Care)이나 허가가 면제되는 비인가 서비스로서 놀이그룹, 태평양 도서 영유아 그룹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의 수적 현황을 보면, <표 III-1-1>과 같다. 시설 수에서

보육시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유치원의 비율이 14% 정도이다. 즉,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보육시설에 유아교육적인 기능을 많이 부여되긴 하였으나 수적으로 보육시설이 많고 이용아 수도 보육시설이 훨씬 많다.

<표 III-1-1>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현황(2010)

	시설 수		이용 아동 수	
	수 (개)	비율(%)	수 (명)	비율 (%)
유치원	632	14.6	37,600	19.9
놀이센터	461	10.7	15,049	8.0
보육시설	2,419	56.0	109,204	57.8
가정 보육	307	7.1	17,084	9.4
원주민 육아지원센터	463	10.7	9,370	5.0
기타	39	0.9	617	0.3
계	4,282	100.0	188,924	100.0

자료: <http://www.educationcounts.govt.nz>

4)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1980년대 중반 교육부 관할 업무로 통합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수 년 간에 걸쳐 교사양성 및 처우개선, 교육과정 통합, 재정지원의 통합 등 각 부문별로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 현재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보지 않고 '영유아기 교육(ECE)'으로 통일하여 교육부가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보육, 놀이센터 등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모든 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특성은 교육부 관할로 영유아기 육아서비스가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각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자격의 교사, 동일한 영유아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던 뉴질랜드의 보육이 유아교육과 동일한 질적 수준으로 올라감으로써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국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게 한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행정상으로는 교육부 중심의 통합이고, 내용상으로는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사인력의 통합이며, 기능적으로

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목적상의 장점을 그대로 둔, 이원화를 인정한 통합이라 하겠다.

나. 영국

1) 관할 행정 기관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업무는 2010년 5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내각 하에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관할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서 주관하던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가 2010년 부처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부로 변경된 결과이다(<http://www.education.gov.uk>).

영유아 교육과 보육 기관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 산하 기관은 아니면서 부처와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교육·아동복지·기술 표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자격증 관리는 별도로 자격·교육과정국(The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문무경, 2007).

영유아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서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제도가 있다. 영국에서 3,4세 유아는 38주 동안 매주 15시간씩 유아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nurseries), 놀이집단, 유아학교(preschools), 보육시설(day cares), 보육사(childminder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통합과정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1997년 이전까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교육부와 노동부 관할 업무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이 1997년 집권하면서 ECEC 서비스의 확대지원과 체제 개편을 내세우고 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저소득층과 소외집단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노동부가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통합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하나의 부처 내 업무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두 업무는 모두 교육고용부 산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에서 총괄했다. 이후 교육고용부는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가 2007년 다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기술혁신사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분리된다. 이 때 유아교육과 보육은 함께 아동학교가족부 업무로 소속이 되고, 2010년 부처 조직 개편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관할 업무로 정리된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통합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이 사업 자체의 영역별 통합을 피하여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업무를 맡아보던 각각의 정부 부처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부처 업무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서비스 유형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다양한 유아교육, 보육 기관들이 동일한 행정 부처 관할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이 의무 초등학교를 5세에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의 대표적인 교육·보육 기관들은 대부분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이다(<http://www.education.gov.uk/>).

첫째, 슈어스타트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ers)가 있다. 종일보육(18시 까지)과 단기 보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0-4세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 지원 등 포괄적, 통합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Nursery Schools)이 있다. 이는 2세 반 이상 5세 미만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로 반일제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초등학교 내에 위치하는 유아학급(Nursery Classes)이 있다. 이는 취학 직전 연령인 3~4세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일반적으로 15:30분경에 일일 프로그램을 마친다.

넷째, 유아학교(Preschools)와 놀이집단(Playgroups)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모나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대부분 2~4시간 정도 운영하는 파트 타임 서비스이다. 5세 이하 모든 연령 영유아가 대상이 된다.

다섯째, 보육시설(Day Nurseries)이 있다. 0~4세 영유아가 대상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녁 7시까지 종일제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섯째, 보육사(Childminders)를 이용하기도 한다. 보육사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보육으로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특징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뉴질랜드와 비슷한 점이 많으나 통합과정에서는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관할 부처의 통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라는 점이다. 물론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부처 통합이었으므로 영국 정부의 의도가 실린 정책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정부의 의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통합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있던 다양한 교육, 보육 서비스 기관들이 형태를 바꾸는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육시설, 가정보육(보육사) 등이 모두 교육부 관할 업무가 되었고 소비자인 부모들은 변함없이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연령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이나 유아교실 등 유아교육 기관이나 보육시설 모두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와는 무관한 독립된 기관에서 엄격히 실시한다는 점이다. 「교육·아동복지·기술 표준청」이 유아기 이상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나,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초등학교 입학 직전 2년인 3, 4세 유아들에게는 주간 20시간씩의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아교육기관이든 보육시설이든 무관하게 어떤 곳에 있든 20시간 무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함과 더불어 교육과 보육 간 실제적 통합을 이루고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하게 되는 5세 무상 공통 교육 정책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 영국 및 뉴질랜드의 이 같은 시간제 무상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단선형 통합

단선형 통합이라는 명칭을 붙인 스웨덴의 모형은 본질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않고 보육 속의 교육, 교육 속의 보육을 지향하여, 취학전 만6세

까지 통합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기관에서 제공하는 형태이다.

가. 스웨덴

1) 관할 행정 부처

스웨덴은 1-6세 영유아의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과학부가 맡고 있다. 이는 1996년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유아교육·보육 업무가 이관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일이며, 이 나라에서는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까지 실제로 없어졌다.

스웨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규제와 감독은 국립교육원(Scholverket)이 담당하고 있다. 국립교육원은 모든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감독하는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며 연수를 실시하기도 한다(문무경, 2006).

2) 통합의 과정

스웨덴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이라기보다는 관할부처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1996년 복지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업무가 이관될 때 보건사회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들은 큰 문제없이 교육과학부로 옮길 수 있었으며, 보건사회부에서 이동한 담당자들과 교육과학부의 기존 담당자들이 통합된 집단을 형성하여 1-16세까지 교육의 모든 업무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있던 복지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정지원 확대이다. 스웨덴의 아동당 의무교육 비용이 유아교육비용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세 아동을 학교교육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이관을 환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이동 과정에서는 큰 갈등이 없었지만 교육과학부로 이관된 유아교육을 학교교육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찬성하는 입장은 학교시스템 안에서 아동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종일제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할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입장은 유아교육의 '학교교육화' 혹은 학교교육의 '유아교육화'로 변질될 상황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런 입장차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학교교육 통합은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합

의되었다.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조합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유는 보육의 교육화로 인해 보육시설의 침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교교사단체들은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가 낮아질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한 목소리들도 있었다. 이러한 저항에 대해 국립교육원은 자체 평가를 통해 교육적, 전문적, 재정적 측면이 잘 갖추어진 지자체에서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교육적 측면보다 재정적 요구가 더 강할 때 저항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재정, 행정·조직 등 실행에 필요한 책임분배를 각 개인에게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

3) 서비스 유형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기관은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적인 스웨덴은 교육·보육 기관은 유아학교(Pre-school: Förskola)이다. 1~5세 또는 소수의 6세 영유아에게 연중무휴 종일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립과 사립 유아학교가 있다. 사립 유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은 이용자 전체의 17% 정도이다. 1-2세 아동의 45%, 2-3세 아동의 86%, 5세 아동의 96%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다. 유아학교 중에는 취업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간제 개방형 유아학교도 있다.

둘째, 가정보육시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child-minders)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정보육을 제공하며 취학전 전연령이 이용할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1~6세 영유아 전체의 7% 정도이며, 해가 갈수록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보육시설 또한 공립과 사립이 있으나 사립의 이용 아동수는 공립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취학직전 연령인 6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이 있다. 스웨덴 6세 유아의 91%가 유아학급에 등록하고 있으며 약 7%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유아학급은 주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4) 특징

스웨덴의 통합모델은 엄밀히 말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 부처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복지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교육과학부로 이전하게 되면서 교육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학교교육으로 유아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연령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동일 부처에서 관할하는 형태라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부로 이관할 때도 큰 갈등이나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담당 부처의 이관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입지에 대한 염려나 ECEC 서비스의 복지적 측면 축소에 대한 우려로 약간의 저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도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이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아교육이 학교교육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동일부처 관할 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형태인 유아학교 프로그램으로 단일한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연령구분형 이원화 체제 I : 5+1 형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모델과는 달리, 연령별로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있다. 이를 이원화 체제로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연령별로는 하나의 체제로 정리된 형태이므로 또 다른 통합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연령별로 구분된 이원화 체제 중 덴마크와 핀란드가 취하고 있는 「5세 이하 보육 + 6세 교육」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형태가 덴마크는 보육 중심이기는 하나 교육적 연계를 강조하여 다양화되어 있는데 비해 핀란드는 보다 보육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덴마크

1) 관할 행정 부처

덴마크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6세까지의 보육과 6세 이상 7세 미만의 취학 전 1년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되어 이원화 체제를 보이고 있다. 만 7세가 되어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덴마크는 취학 전 1년 동안 6세 유아들이 학교준비도를 높이고 학교체제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에 위치한 예비 초등교실(Pre-primary classes)에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소속이다. 그러나 6세 미만 영유아가 다니는 나머지 보육시설, 유아 교육기관들은 모두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 관할하고 있다.

예비초등교실은 「덴마크 초중등교육법(Danish Act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에 법적 근거를 의거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등 영유아 서비스는 「보육시설법(Day-Care Facilities Act)」에 근거하고 있다.

덴마크는 법적으로 모든 취학전 아동(생후 26주 이후)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영유아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소위 '보육시설 이용 보장'(guaranteed day-care availability)이라는 법적 용어로 표현한다(<http://www.eng.uvm.dk/>).

2) 서비스 유형

덴마크의 영유아 대상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http://english.sm.dk/social-issues/children-and-youth/Sider/Start.aspx>).

첫째는 보육시설(Day Nurseries)로 3세까지의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육시설에 속하는 유형으로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공립보육시설, 공립가정보육시설, 사립가정보육시설, 인가사립보육시설, 그리고 지방정부와 운영계약을 통해 민간이 설치하는 독립보육시설 등이 모두 보육시설의 형태에 속한다.

둘째는 3세에서 7세까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Kindergarten: *Børnehaver*)으로, 이 또한 사회부의 관할에 속한다.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주 3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셋째는 연령에 무관하게 모든 아동(3개월~14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합시설(age-integrated facilities: *Adlersintegrerer*)이 있다. 영유아기 아동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은 방과전후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넷째는 예비초등교실이다.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초등준비 유아교육과정으로, 모든 6세 아동이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특징

덴마크는 5세이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사회부 관할 업무로 소속되어 있고, 취학전 1년인 6세아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아학급(예비초등교실)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영유아 서비스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6세 이하 영유아의 교육적 발달 지원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2004년 8월 이후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7세 이후의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별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의무부과가 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의 교육·보육 과정은 6개의 핵심 영역(포괄적 전인발달, 사회성, 언어, 신체운동, 자연과학, 문화가치)을 반드시 포함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세 가지 측면의 보육환경(물리적 환경, 심미적 환경, 정신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의 유아교육·보육 제도와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5세까지 영유아 대해서는 복지측면의 보육을 강조하여 모든 가정 아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사회부의 업무로 두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상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2004년 이후부터는 초등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복지사업으로만 두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교육과의 연계가 피할 없다는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나. 핀란드

1) 관할 행정 부처

핀란드의 영유아기 서비스 제도는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영유아기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목적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5세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는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관으로 되어 있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7세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핀란드는 취학전 1년인 6세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교(Pre-school, Pre-Primary)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 과정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소관 업무로 하여 연령 간 구분을 볼 수 있다(이윤진, 송신영, 2009).

2) 서비스 유형

핀란드의 영유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인다. 비록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93%이상(2006년 통계)이 첫 번째의 공립 보육서비스에 속하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시설이라는 단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핀란드에서는 5세 이하까지는 보육시설이, 그리고 6세는 교육부 소관 유아학교가 담당한다고 보겠다.

첫째, 공립 보육서비스이다. 이는 다시 공립보육시설(paivakoti)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보육 시설(open daycare centre)도 운영하고 있다. 공립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시설과 가정보육을 합쳐 93%에 이른다.

둘째, 민간 보육서비스이다. 민간보육서비스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100% 민간 시설이 있고 지자체가 공급자를 선정하는 지자체 계약 민간 시설이 있다. 이는 덴마크의 서비스 유형과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사립보육수당(private childcare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셋째, 유아학교(Pre-School, Pre-Primary)가 있다. 이는 6세 유아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이며, 반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원칙적으로 아동은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 보육시설 등 어떤 기관에서든 1년간의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체 6세 유아의 96%가 유아학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 초등 준비과정을 이수한다.

3) 특징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덴마크의 경우와 매우 비슷

한 제도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까지 사회보건부가 모든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6세 1년간 교육부가 유아학교를 담당한다는 점이 그러하고, 서비스의 유형에서 민간 개인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통해 공립의 성격을 띠는 독립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유형의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5세까지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 덴마크는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유치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통합연령시설도 있으나 핀란드는 단순히 보육시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1년간의 유아학교가 덴마크는 대부분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유치원에 설치된 곳도 있음) 예비초등교실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핀란드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조차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5세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운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4. 연령구분형 이원화 체제 II: 3+3 형

연령별로 구분된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 중 독일과 프랑스 등은 「3세 미만 보육 + 3세 이상 교육」의 형태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 독일

1) 관할 행정 부처

독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는 바, 0세부터 3세미만의 영아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Ministry of Youth, Families, Women, and Health)가 관할하고 있으며, 3세 이상 5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방정부의 부처들은 주로 정책수립과 연구를 담당하고 실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행·재정 업무는 각 주의 청소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 및 교육청과의 협력하에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체계가 주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이명환, 박수연, 2010).

2) 서비스 유형

독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유아원과 3~5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5세 이후 준비도의 차이로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초등학교내 '학교유치원(school-kindergarten)'이나 '시작학급(start-class)' 등이 소수 있으나 이는 학교체제 내의 기구로 분류되므로, 영유아를 위한 기본적 서비스로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독일의 영유아 서비스는 연령별로 단순화된 단일 형태의 두 개 기관만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첫째,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를 위한 유아원(Kinderkrippe)이 있다. 대부분 취업모나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를 종일제로 돌보는 기관으로, 최근들어 점차 보호나 위생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통계로 417,000명의 3세 이하 영아가 유아원(보육사 포함)에 다니고 있으며 이는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의 2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두 번째는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Kindergarten)이다. 독일은 1996년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만3세 이상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반일제였던 유치원은 최근 들어 점차 종일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기준 유치원 이용률은 독일 전체에서 92.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치원 이용 유아 중 종일제를 이용하는 비율은 22.1%에 그친다. 독일 연방은 주에 따라 학비 지원을 하는 형태가 다르나 일부 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한 해 동안의 유치원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특징

독일의 유아원과 유치원은 개인 소유가 없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이거나 종교 및 사회단체 등 법인이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는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초등교육과정과 함께 교육계획이 마련되고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정기적으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하며 재교육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 교육과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독일의 유치원은 표방하고 있는 교육내용상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여, 상황중심, 통합교육, 가족그룹지향, 몬테소리, 발도르

프, 숲 유치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볼 때 독일은 3세를 전후하여 이분되어 있는 유아원과 유치원이 운영과 활동 내용에서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아원은 이용비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도 종일반 이용은 저조한 편이어서 종일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기관보다는 개인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듯하다. 독일의 유아원은 교육보다는 보육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영아 또한 교육적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나. 프랑스

1) 관할 행정 부처

프랑스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연령별로 이원화 되어있다.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보육기관인 크레쉬(creche)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부서가 통합되어 새롭게 출발한 노동·사회·가정·도시부(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Families, and Cities)로부터 감독과 지원을 받으며, 가족수당지급처(CAF)나 모자보건국(PMA) 등 여러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있다(정미라 외, 2009).

반면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 재정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교육부 내의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과 교원관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100%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나 1982년 지방분권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교육과 보육 체제는 지자체 관할 체제로 전환되어 중앙 정부는 법령 공포나 조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보육시설의 설립, 시설인가, 관리 감독, 유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많은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다. 관련 기관으로서, 가족수당지급처(CAF)는 보육비용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모자보건국(PMA)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부분의 공립유치원의 신개축, 건물유지보수, 운영비용 지원 등도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다.

2) 서비스 유형

프랑스는 연령에 따라 서비스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바, 0-2세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보육시설인 크레쉬와 가정보육모가 있고, 3세 이상 6세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는 유아학교(ecole maternelle)와 사립유치원 등이 있다.

첫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crèche)이 있다. 이들 보육시설은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통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이 있고 시간제 시설도 있다. 전체 영아 중 10%정도가 이러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 영아보육 서비스로 가정보육(crèche familiales)시설이 있다. 등록된 보육모들로 조직된 가정보육시설로, 지방정부가 보육모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셋째, 등록된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들이 있어 이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한다. 보육모를 이용하는 영아비율이 오히려 시설보육보다 높아 18%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영아의 보육이용율이 낮다.

넷째, 유치원(jardins d'enfants)이 있다. 만 3-5세의 유아를 위한 정규교육기관으로 부모가 유아학교와 유치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육시설과 유아학교의 중간 형태로 사립기관이다.

다섯째,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s)를 들 수 있다. 유아학교는 취학전 3-5세 연령을 위한 공교육 기관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된 정규 교육제도로 확립되어 있고 전면 공공재원에 의해 운영되어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은 교육부가 65%, 지방정부가 35%를 부담한다. 현재 유아들의 유아학교 이용률은 100%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학교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교육부가 구 관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부 산하에 총괄장학국(Inspection generale)을 두어 장학사들이 활동하고 감독하게 한다. 교육부는 특히 5세와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육과정을 연계체제로 운영하며 교사양성제도도 초등과 유아교육 간 통합하였다.

3) 특징

프랑스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징은 연령별로 구분된 두 가지 유형의 기관이 있어 영아는 보육시설에, 유아는 유아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으로 보이지만, 영아의 경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총 35%를 넘지 않고 65%가 부모 양육을 택하고 있어 보육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라 보겠다. 그럼에도

도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두고 보육모 등 인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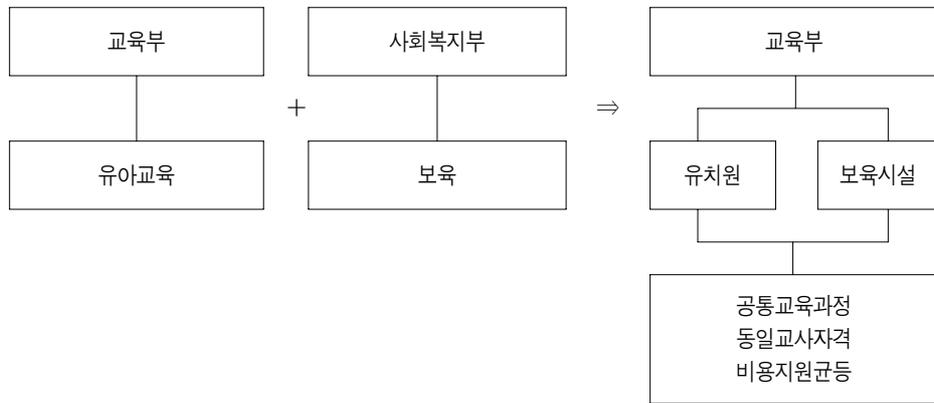
두 번째는 보육과 유아교육,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간 연계를 중요시하여 아동의 돌 사이 이동이 유연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겠다. 보육과 유아교육 기관 간에는 연계반(*classe passerelle*)이라 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하여 설립한 제도이며, 2세 영아가 유아학교로 옮겨가기 전 몇 개월 동안 학교 적응을 연습하는 곳이다.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아원을 두고 교육을 강조하면서 보육시설로서 기능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도 하고, 아예 조기입학으로 2세반 정도 영아가 유아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와의 연계는 더욱 공고하여, 유아학교는 완전히 학교체제 속에 있고 운영이나 교육내용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양태를 보인다. 특히 5세는 유아교육의 형태라기보다는 교육평가 등을 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초등교육에 더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육과 연결되는 형식의 무상교육을 만3세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에 대한 강조로 유아학교 입학 연령을 더욱 낮추어 가는 경향도 있다. 영아를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은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지만, 상호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 대부분을 이양 받은 지자체는 소관 하위 부서는 다르더라도 동일 지자체 기관 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노력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형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 유형이 있어 부모들의 선택권은 넓으나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교육부 관할이었던 유치원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부의 보육 업무와 행정적으로 '통합'되면서 교육부로 일원화 된 경우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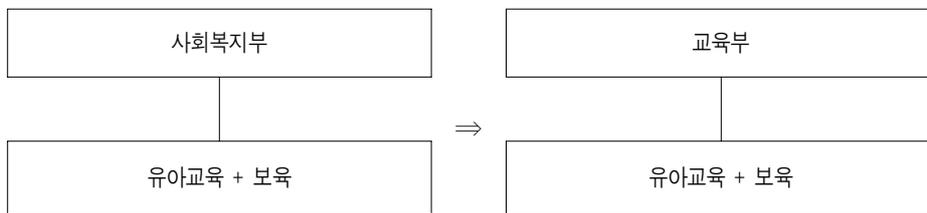
[그림 III-5-1]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교육부 관할 업무인 모델(뉴질랜드/영국형)

뉴질랜드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간 통합 사업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교육과 동일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고, 그 이면에는 국가는 취업모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교육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취업한 부모의 아이를 돌보는 데에서 타당성을 찾기 보다는 영유아 전체에 대해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더 둔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있고서 뉴질랜드는 가장 먼저 두 부처(실은 세 부처로, 원주민 담당부 포함)의 장관급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만들고 이후 비용지원,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을 통일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쳤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정착되기까지 거의 10여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통합을 준비하는 다른 나라에 좋은 사례가 된다.

뉴질랜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교육부라는 단일 부처 아래에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형태로 육아지원기관이 통합되기 보다는 교사나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수준이 높아진 시점에서 운영시간이나 원장의 철학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이 보육 혹은 교육 어느 쪽이든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기울어졌던 보육시설의 질이라는 측면을 보완하고 교육이 가진 장점들을 같이 흡수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더 높아진 결과를 보인다.

여기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전체를 평가하는 유아서비스 평가제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두 번째의 통합 형태는 스웨덴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분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분할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를 관할해 온 경우이다. 스웨덴은 1996년에 이르러서 사회보건부 관할이었던 영유아학교(피르스콜라)가 재정적인 이유와 함께 교육적 측면에 대한 강화를 위해 교육부로 업무 이관 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상적으로 융합된 형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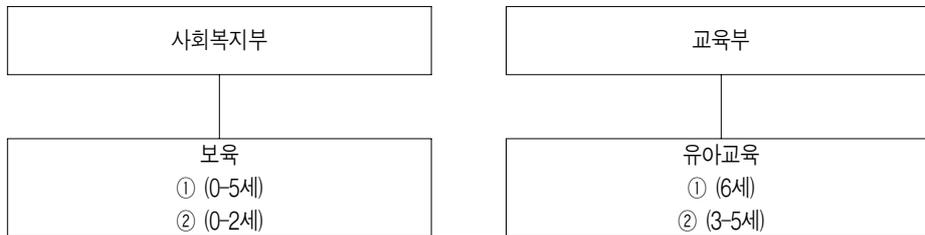
[그림 III-5-2] 유아교육과 보육이 하나의 서비스로 융합된 모델(스웨덴)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통합이라기보다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영아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호를, 그리고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교육적 성격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의 형태를 들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체제는 덴마크 및 핀란드의 경우와 형태는 비슷하나, 구분하고 있는 연령에서 차이가 난다. [그림 III-5-3]에서 ①에 해당하는 경우가 덴마크와 핀란드이고 ②에 해당하는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 등이다. 두 유형은 아동의 어느 연령에서 초등준비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강력한 교육적 마인드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 시점의 차이를 보여줄 뿐, 형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신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동들이 매우 느슨한 '보육적' 환경에 있고 영아는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2세 아동이 유아학교로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독일의 경우도 보육시설에 '교육적'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진다는 분석은 향후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형태와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분화된 제도이더라도 덴마크와 핀란드는 교육과 보육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5세 이하 과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세 이하만 보육 영역에 두는 프랑스의 경우 보육은 유아교육으로 가기 위한 이전의 '보호' 과정으로만 두고 있는 듯하다.



[그림 III-5-3] 연령별로 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모델(덴마크 등)

IV.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통합 방향의 인식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에 대한 인식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에서는 공무원, 학계 전문가(교수), 기관관련자(원장 또는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성격이나 현황, 차이를 보여주는 문장을 주고 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의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0-1〉 의견조사 참여자 특성

공무원, 전문가, 현장인력		계(n=1200)	학부모		계(n=800)
성별			성별		
	남	8.0		남	5.8
	여	92.0		여	94.2
학력			학력		
	고졸이하	1.4		고졸이하	11.5
	전문대졸	17.1		전문대졸	32.5
	대졸	34.8		대졸	46.0
	대학원이상	46.6		대학원이상	10.0
대상자구분			직업		
	유아교육담당공무원	8.3		농업종사자	1.3
	보육담당공무원	8.2		상업자영업	3.3
	유치원장	15.8		공장근로자	0.4
	어린이집원장	25.1		사무직근로자	21.1
	유아교육 학계전문가	9.0		서비스직근로자	6.1
	보육 학계 전문가	7.8		전문직종사자	35.2
	유치원교사	17.5		주부	22.9
	어린이집교사	8.3		기타	9.6
연령			연령		
	30대이하	34.3		20대	6.9
	40대	40.6		30대	71.2
	50대이상	25.1		40대이상	21.9
지역규모			지역규모		
	대도시	39.8		대도시	37.1
	중소도시	26.3		중소도시	20.3
	읍면지역	33.8		읍면지역	42.6

단위: %(명)

1. 유아교육과 보육 간 차이 및 통합 필요성 인식

유아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본질적 성격과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들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를 알아보았다.

가. 본질적 차이

‘영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9.3%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11.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학계, 기관, 부모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기관에서는 보육담당과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유아교육담당과 유치원보다 조금 높았다. 학부모에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계전문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 참조).

〈표 IV-1-1〉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을 통합된 활동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전체	5.0	6.4	9.3	20.5	58.8	1000(1979)	4.2	1.16	
공무원									
유아교육	11.0	8.0	7.0	30.0	44.0	1000(100)	3.9	1.35	-2.63**
보육	3.1	3.1	7.1	32.7	54.1	1000(98)	4.4	0.96	
학계									
유아교육	0.0	1.9	1.9	12.0	84.3	1000(108)	4.8	0.57	1.56
보육	2.1	3.2	1.1	17.0	76.6	1000(94)	4.6	0.84	
기관									
유치원	11.0	9.2	14.6	24.9	40.3	1000(390)	3.7	1.36	-7.98***
어린이집	2.5	7.1	7.3	10.8	72.3	1000(397)	4.4	1.06	
부모									
유치원	5.1	8.8	14.4	25.0	46.7	1000(396)	4.5	0.92	6.62***
어린이집	2.5	3.0	6.1	18.9	69.4	1000(396)	4.0	1.19	

** p< .01, *** p< .001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을 통합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공무원, 학계전문가들은 영유아 대상 연령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모들은 교육과 보육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IV-1-2 참조).

〈표 IV-1-2〉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을 통합된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원장	부모	전문가	계
전체	29	21	14	64
대상 연령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져야 함	19	7	9	35
보육과 교육은 다른 개념임	2	10	5	12
교육과정 및 교사 자격에 차이가 있음	5	3	-	8
제도 및 관할 부처의 차이가 있음	2	1	-	3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

‘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0.0%로 절반정도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34.6%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계전문가와 기관에서는 유아교육 쪽에서 그렇다는 긍정적으로 동의한 반면,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강해 차이를 보였다. 부모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1-3 참조).

〈표 IV-1-3〉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임’ 동의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9.9	14.7	15.4	25.4	24.6	100(1,980)	3.2	1.46	
공무원									
유아교육	2.0	8.1	9.1	25.3	55.6	100.0(99)	4.2	1.05	5.72***
보육	9.2	18.4	20.4	35.7	16.3	100.0(98)	3.3	1.21	
학계									
유아교육	20.4	13.9	13.0	31.5	21.3	100.0(108)	3.2	1.45	3.93***
보육	33.0	25.5	12.8	23.4	5.3	100.0(94)	2.4	1.3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기관									
유치원	4.1	5.6	11.0	27.1	52.2	100.0(391)	4.2	1.09	23.17***
어린이집	44.5	20.6	13.8	14.6	6.5	100.0(398)	2.2	1.31	
부모									
유치원	5.8	9.8	19.9	33.1	31.3	100.0(396)	3.7	1.17	-12.62***
어린이집	29.0	21.0	18.2	23.2	8.6	100.0(396)	2.6	1.34	

단위: %(명), 점

*** p< .001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와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돌봄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장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육과 돌봄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간의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IV-1-4 참조).

〈표 IV-1-4〉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으로 볼 수 없는 이유

구분	단위: 명			
	원장	부모	전문가	계
전체	126	125	90	341
두 기관 모두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함	35	66	52	153
어린이집은 교육과 돌봄 모두 제공함	68	42	24	134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개념이 아님	14	14	11	39
유치원은 교육과 돌봄 모두 제공함	3	2	1	6
어린이집은 교육 제공이 어려움	3	-	-	3
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져야 함	-	-	2	2
기타	3	1	-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3%로 절반정도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7.1%로 나타났다.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이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기관에서는 유아교육담당과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강한 반면, 보육담당과 어린이집에서는 그렇다는 동의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학계전문가와 부모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유아교육 전공과 유치원보다는 보육전공과 어린이집이 약간 긍정적인 동의가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동일함’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전체	12.3	14.8	19.5	28.1	25.2	100(197)	3.4	1.33	
공무원									
유아교육	31.3	14.1	25.3	21.2	8.1	100.0(99)	2.6	1.34	-7.40***
보육	2.0	7.1	23.5	38.8	28.6	100.0(98)	3.9	0.99	
학계									
유아교육	5.6	12.0	18.5	38.0	25.9	100.0(108)	3.7	1.15	-2.48*
보육	4.3	4.3	9.6	46.8	35.1	100.0(94)	4.0	1.00	
기관									
유치원	27.0	24.7	22.2	19.6	6.4	100.0(392)	2.5	1.25	-16.76***
어린이집	5.6	7.1	15.9	25.5	46.0	100.0(396)	4.0	1.19	
부모									
유치원	13.4	22.0	23.5	28.0	13.1	100.0(396)	3.1	1.25	8.88***
어린이집	5.1	10.9	16.5	31.3	36.1	100.0(393)	3.8	1.18	

* p< .05, *** p< .001

영유아 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장과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 기준과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IV-1-6 참조).

〈표 IV-1-6〉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원장	부모	전문가	계
전체	108	70	64	242
교사 자격 및 교육관이 다름	43	19	20	82
기능 및 목적이 다름	19	21	14	5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다름	23	17	13	53
주 대상 연령이 다름	8	3	9	20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름	2	5	6	13
교육 시간의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음	7	2	1	10
제도 및 관할 부처가 다름	3	2	-	5
환경 및 근무 여건이 다름	3	1	-	4
부모의 기대치가 다름	-	-	1	1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므로 어린이집과 운영시간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9.8%로 절반이상 나

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20.9%로 나타났다.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3.6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집단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관에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강하였으며, 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보다 그렇다고 동의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1-7〉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동일함’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전체	6.9	14.0	19.3	32.2	27.6	1000(1980)	3.6	1.22	
공무원									
유아교육	5.0	9.0	17.0	30.0	39.0	100.0(100)	3.9	1.17	2.50*
보육	4.1	18.4	23.5	33.7	20.4	100.0(98)	3.5	1.13	
학계									
유아교육	2.8	14.0	16.8	44.9	21.5	100.0(107)	3.7	1.05	1.93
보육	7.4	16.0	22.3	39.4	14.9	100.0(94)	3.4	1.15	
기관									
유치원	4.1	11.2	15.1	36.2	33.4	100.0(392)	3.8	1.13	6.39***
어린이집	12.9	19.2	19.5	24.8	23.5	100.0(395)	3.3	1.35	
부모									
유치원	1.8	9.5	19.3	35.7	33.7	100.0(398)	3.9	1.03	-6.46***
어린이집	10.9	15.7	23.0	27.3	23.2	100.0(396)	3.4	1.29	

* p< .05, *** p< .001

〈표 IV-1-8〉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원장	부모	전문가	계
전체	64	55	56	175
기본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음	44	35	44	123
비용 및 지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4	5	5	14
교사 근무시간 및 처우가 다름	7	4	1	12
운영 내용 및 교육의 질이 다름	2	3	3	8
제도 및 관할 부처가 다름	2	2	1	5
방학 중 운영 여부가 다름	1	3	1	5
종일반 운영 목적이 다름	2	-	-	2
이용 부모의 만족감에서 차이가 남	-	2	-	2
기타	2	1	1	4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운영시간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법에 의한 기본운영 시간의 차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IV-1-8 참조).

다. 행정부처 통합 필요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2.0%로, 그렇지 않다는 14.7%로 나타났다.

〈표 IV-1-9〉 유치원/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 필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전체	7.5	7.2	13.3	21.0	51.0	100(1975)	4.0	1.27	
공무원									
유아교육	12.0	7.0	6.0	21.0	54.0	100.0(100)	4.0	1.40	-1.38
보육	4.1	2.0	17.3	20.4	56.1	100.0(98)	4.2	1.07	
학계									
유아교육	3.7	5.6	4.6	8.3	77.8	100.0(108)	4.5	1.06	1.80
보육	4.3	5.3	9.6	24.5	56.4	100.0(94)	4.2	1.10	
기관									
유치원	16.5	11.6	12.1	21.1	38.8	100.0(389)	3.5	1.50	-7.91***
어린이집	3.8	5.1	11.6	18.0	61.5	100.0(395)	4.3	1.10	
부모									
유치원	8.6	10.4	19.2	22.8	39.0	100.0(395)	3.7	1.30	5.89***
어린이집	3.0	4.0	14.1	25.0	53.8	100.0(396)	4.2	1.03	

*** p < .001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0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집단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관과 부모집단에서 유치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표 IV-1-9 참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과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장,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 부모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원장과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는 영유아 연령별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V-1-10〉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관할부처 통합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구분	시설장	부모	전문가	단위: 명	
				계	
전체	33	28	27	88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함	-	-	2	2	
제3의 부서로 통합되어야 함	-	-	1	1	
기능 및 목적이 다름	16	18	9	43	
통합 시 부작용이 예상됨	5	2	-	7	
현 제도 및 관할 부처의 차이	1	-	1	2	
영유아 연령별로 이원화 담당이 바람직함	9	2	9	20	
따로 관리할 때 효율성이 높음	-	1	-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2	5	5	12	

2. 영유아 부모의 유아교육·보육 제도 차이 인지

가. 법·행정 체계

‘어린이집은 0-5세, 유치원은 만 3-5세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현행 법 체계에 대해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 80-9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에 속해 있다’ 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도 80% 이상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표 IV-2-1〉 현행 유·보 행정 및 법 체계 차이 인지 여부

유아교육·보육 간 차이		알고 있음	모름	계	단위: %(명)	
					$\chi^2(df)$	
유치원은 만3세~만5세, 어린이집은 0~만5세가 이용가능 연령임	전체	89.6	10.4	100.0(752)	3.4(1)	
	유치원	87.6	12.4	100.0(379)		
	어린이집	91.7	8.2	100.0(373)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이 적용됨	전체	85.4	14.6	100.0(755)	2.0(1)	
	유치원	83.6	16.4	100.0(379)		
	어린이집	87.2	12.8	100.0(376)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임	전체	82.8	17.2	100.0(750)	0.0(1)	
	유치원	72.7	17.3	100.0(376)		
	어린이집	82.9	17.1	100.0(374)		

유아교육·보육 간 차이		알고 있음	모름	계	$\chi^2(df)$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시·도청 및 시· 군·구청의 관리를 받음	전체	79.9	20.1	100.0(741)	0.1(1)
	유치원	79.4	20.6	100.0(374)	
	어린이집	80.4	19.6	100.0(367)	

나. 지원 체계

‘유치원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장학지원제도가 없다는 현행 지원체계에 대해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 60%이상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은 유치원 평가 후 컨설팅 등 관리를 받으며,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후 재인증 제도를 통해 질적 수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75.4%의 부모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부모는 69.1%, 어린이집은 81.8%가 알고 있었다고 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교육 담당 행정인력은 1인 80개원, 보육 담당 행정인력 1인 49개원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24.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26.5%, 23.2%로 비슷하게 응답되었다(표 IV-2-2 참조).

〈표 IV-2-2〉 현행 유·보 지원체계 차이 인지 여부

단위: %(명)

유아교육·보육 간 차이		알고있음	모름	계	$\chi^2(df)$
유치원은 교육청이 장학관리 및 지원, 어린이집은 장학지원 제도 없음	전체	64.2	35.8	100.0(752)	1.7(1)
	유치원	66.5	33.5	100.0(382)	
	어린이집	61.9	38.1	100.0(370)	
유치원은 유치원평가와 관리,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질적 수준 관리 함	전체	75.4	24.6	100.0(755)	16.3(1) ^{***}
	유치원	69.1	30.9	100.0(382)	
유아교육 담당 행정인력은 1인 80개원, 보육 담당 행정인력 1 인 49개원을 담당하고 있음	전체	24.8	75.2	100.0(745)	1.1(1)
	유치원	26.5	73.5	100.0(378)	
	어린이집	23.2	76.8	100.0(367)	

*** p< .001

다. 기관 운영

‘어린이집은 임대건물 사용이 가능한 반면, 유치원은 불가능하다’는 현행 설치 및 운영 체계에 대해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 37.6%만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구비가 필수인 반면, 어린이집은 50명 정원 이상인 곳만 필수 구비 요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은 결과, 어린이집 부모는 49.3%, 유치원은 36.6%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은 1월 1일-12월말까지 회기 운영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3월 1일-2월말 학년제도로 학사일정을 진행 한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60%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가 있으나 유치원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에 대해서도 50%이상 인지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 기본운영, 유치원은 3, 5, 8시간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유치원 부모들의 경우 68.1%, 어린이집 부모들은 75.4%로 응답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부모들이 알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표 IV-2-3〉 현행 유·보 설치 및 운영 체계 차이 인지 비율

단위: %(명),

유아교육·보육 간 차이		알고있음	모름	계	$\chi^2(df)$
유치원은 임대건물 사용 불가, 어린이집은 사용가능함	전체	37.6	62.4	100.0(766)	0.1(1)
	유치원	38.1	61.9	100.0(388)	
	어린이집	37.0	63.0	100.0(378)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구비 필수, 어린이집은 정원 50인 이상 기관 만 필수임	전체	42.9	57.1	100.0(762)	12.6(1)***
	유치원	36.6	63.4	100.0(385)	
	어린이집	49.3	50.7	100.0(377)	
유치원은 3월 1일-2월말 학사일정 운영, 어린이집은 1월 1일-12월말까 지 회기 운영	전체	60.9	39.1	100.0(758)	2.2(1)
	유치원	63.5	36.5	100.0(384)	
	어린이집	58.3	41.7	100.0(374)	
어린이집은 입소우선순위제도(저 소득층 자녀, 장애아 등)가 있으나 유치원은 없음	전체	53.3	46.7	100.0(754)	2.6(1)
	유치원	50.4	49.6	100.0(381)	
	어린이집	56.3	43.7	100.0(373)	
유치원은 3, 5, 8시간, 종일제 운 영, 어린이집 종일 12시간이 법적 운영시간임	전체	71.7	28.3	100.0(752)	5.0(1)**
	유치원	68.1	31.9	100.0(382)	
	어린이집	75.4	24.6	100.0(370)	

** p < .01, *** p < .001

라. 비용

‘유치원은 반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은 종일 활동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는 재정 지원체계에 대해 부모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부모 60%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시간별 차등지불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차등지불이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7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부모는 67.5%, 어린이집 부모는 76.8%로 어린이집 부모가 알고 있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비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유치원 부모들의 경우는 53.7%, 어린이집 부모들은 6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4〉 현행 유·보 재정 지원체계 차이 인지 여부

단위: %(명)

유아교육·보육 간 차이		알고 있음	모름	계	$\chi^2(df)$
유치원은 반일제 수업, 어린이집은 종일 활동으로 저소득층 비용지원 기준 적용됨	전체	68.1	31.9	100.0(755)	0.1(1)
	유치원	67.7	32.3	100.0(384)	
	어린이집	68.5	31.5	100.0(371)	
유치원은 이용시간에 따른 교육비 지불, 어린이집은 이용시간별 보육료 차등 지불 없음	전체	72.1	27.9	100.0(752)	7.9(1)**
	유치원	67.5	32.5	100.0(382)	
	어린이집	76.8	23.2	100.0(370)	
유치원은 교육비 수준 기관 자율,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제 적용 받음	전체	61.5	38.5	100.0(750)	20.0(1)***
	유치원	53.7	46.3	100.0(382)	
	어린이집	69.6	30.4	100.0(368)	

** p< .01, *** p< .001

3.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서로 간 차이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제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과 행정 체계, 지원 체계,

기관 설치 및 운영, 재정 등의 측면에서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가. 법규 및 행정체계

1) 이용 연령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영유아 연령이 차이가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IV-3-1〉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연령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¹⁾	39.2	38.0	22.9	100.0(1,190)	
공무원					
전체	39.1	40.1	20.8	100.0(197)	13.2(2)*
유아교육	51.0	35.0	14.0	100.0(100)	
보육	26.8	45.4	27.8	100.0(97)	
학계					
전체	36.6	50.5	12.9	100.0(202)	11.1(2)**
유아교육	39.8	54.6	5.6	100.0(108)	
보육	33.0	45.7	21.3	100.0(94)	
기관					
전체	39.8	34.3	25.9	100.0(791)	66.4(2)***
유치원	52.9	31.1	15.9	100.0(395)	
어린이집	26.8	37.4	35.9	100.0(396)	
부모					
전체	64.1		35.9	100.0(790)	13.4(1)***
유치원	70.3		29.7	100.0(397)	
어린이집	57.8		42.2	100.0(393)	

* p< .05, ** p< .01, *** p< .001

주: 1) 전체 비율은 부모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2) 학부모의 경우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선택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우선-중장기 구분이 불가함. ※ 이하 모든 동일 표에는 위의 주¹⁾, 주²⁾가 적용됨.

그 결과 우선 개선 필요하다는 39.2%,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38.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행 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2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유아교육 담당자들은 우선 개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51.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육 담당자들은 중장기 개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5.4%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학계전문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전공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보육 전공자들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3%로 유아교육(5.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은 유치원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로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중장기 개선 필요하다(37.4%) 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35.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42.2%로 유치원 부모들의 29.7%에 비해 높게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표 IV-3-1 참조).

〈표 IV-3-2〉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연령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8안	계
전체	16.1	1.5	2.4	6.1	36.9	23.0	9.8	4.2	100.0(1,398)
공무원									
전체	19.2	0.6	1.3	0.6	39.7	24.4	10.9	3.2	100.0(156)
유아교육	11.6	0.0	0.0	0.0	52.3	24.4	9.3	2.3	100.0(86)
보육	28.6	1.4	2.9	1.4	24.3	24.3	12.9	4.3	100.0(70)
학계									
전체	19.9	0.0	0.6	4.5	37.5	17.0	9.1	11.4	100.0(176)
유아교육	9.8	0.0	0.0	2.0	54.9	17.6	5.9	9.8	100.0(102)
보육	33.8	0.0	1.4	8.1	13.5	16.2	13.5	13.5	100.0(74)
기관									
전체	13.3	2.1	2.5	6.1	40.6	23.3	9.6	2.5	100.0(571)
유치원	5.8	0.	1.5	1.2	55.9	28.3	5.2	1.5	100.0(329)
어린이집	23.6	4.1	3.7	12.8	19.8	16.5	15.7	3.7	100.0(242)
부모									
전체	17.0	1.6	3.4	8.3	31.5	24.2	9.9	4.0	100.0(495)
유치원	11.3	1.1	1.5	3.6	44.0	30.9	5.8	1.8	100.0(275)
어린이집	24.1	2.3	5.9	14.1	15.9	15.9	15.0	6.8	100.0(220)

주: 1안. 유치원도 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닐 수 있게 하여 어린이집과 구분을 없앴.
 2안. 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1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3안. 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2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4안. 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4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5안. 어린이집은 0세~만2세까지 돌보고, 3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6안. 어린이집은 0세~만3세까지 돌보고, 4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7안. 어린이집은 0세~만4세, 유치원은 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8안. 기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영유아 연령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 한다 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은 0-만2세를 돌보 고, 3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은 ‘어린이집은 0-만3세까지 돌보고, 4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하자’는 의견이 23.0%이었다.

2) 관련 법규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을 따르는 현행 법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 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 장기 개선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우선 개선이 필요하 다 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각각 29.2%, 27.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장기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정도는 공무원, 학계전문가 집단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IV-3-3〉 육아지원기관 적용 법의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구분	우선 개선필요	중장기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단위: %(명)	
					χ^2	(df)
전체	29.2	43.4	27.4	100.0(1,192)		
공무원						
전체	34.3	38.9	26.8	100.0(198)	0.33(2)	
유아교육	35.0	37.0	28.0	100.0(100)		
보육	33.7	40.8	25.5	100.0(98)		
학계						
전체	28.7	52.5	18.8	100.0(202)	0.26(2)	
유아교육	29.6	52.8	17.6	100.0(108)		
보육	27.7	52.1	20.2	100.0(94)		
기관						
전체	28.0	42.2	29.8	100.0(792)	19.9(2)***	
유치원	24.6	38.3	37.1	100.0(394)		
어린이집	31.4	46.0	22.6	100.0(398)		
부모						
전체	62.7		37.3	100.0(789)	4.5(1)*	
유치원	59.1		40.9	100.0(396)		
어린이집	66.4		33.6	100.0(393)		

* p< .05, *** p< .001

기관의 원장과 교사의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유치원은 중장기 개선 필요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8.3%, 37.1%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어린이집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0%로 절반 가까이 응답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유치원 부모들이 40.9%로 어린이집 부모들의 33.6%에 비해 다소 높게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표 IV-3-3 참조).

유치원은 교육법, 어린이집은 보육법을 따르는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을 학교 체계 속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27.6%, ‘유치원이 복지시설로 통합해야 한다’는 10.8%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어린이집을 학교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집단의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학교체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치원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부모 모두 ‘새로운 법에 의거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아교육이나 유치원보다 보육,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3-4〉 육아지원기관 적용 법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복지시설로 통합	어린이집 학교 체계로 통합	새로운 법에 의거해야 함	기타	계
전체	10.8	55.6	27.6	5.9	100.0(1,319)
공무원					
전체	9.7	70.3	15.2	4.8	100.0(145)
유아교육	8.3	76.4	8.3	6.9	100.0(72)
보육	11.0	64.4	21.9	2.7	100.0(73)
학계					
전체	4.3	61.0	25.6	9.1	100.0(164)
유아교육	1.1	75.3	14.6	9.0	100.0(89)
보육	8.0	44.0	38.7	9.3	100.0(75)
기관					
전체	8.7	59.9	26.4	5.1	100.0(531)
유치원	4.7	69.8	18.7	6.8	100.0(235)
어린이집	11.8	52.0	32.4	3.7	100.0(296)

구분	유치원 복지시설로 통합	어린이집 학교 체계로 통합	새로운 법에 의거해야 함	기타	계
부모					
전체	15.9	44.7	33.4	6.1	100.0(479)
유치원	12.9	50.9	29.0	7.1	100.0(224)
어린이집	18.4	39.2	37.3	5.1	100.0(255)

3) 관할 행정 부처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8%,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24.7%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할 행정 부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75.3%가 찬성을 함으로써 부처 통합에 대한 동의정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더 많아, 실천이 쉽지 않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개선 또한 31.8%로 상당히 높게 응답하였고 유아교육 측 공무원들이 특히 단기 우선 개선 사안으로 보고 있음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결과이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학계전문가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없이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기관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8%로 어린이집의 18.8% 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유치원 부모들이 40.6%로 어린이집 부모들의 32.7%에 비해 약간 높게 응답해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3-5〉 육아지원기관 관할 부처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1.8	43.5	24.7	100.0(1,190)	
공무원					
전체	35.5	35.5	28.9	100.0(197)	6.61(2)*
유아교육	42.4	27.3	30.3	100.0(99)	
보육	28.6	43.9	27.6	100.0(98)	
학계					
전체	34.7	49.0	16.3	100.0(202)	1.04(2)
유아교육	36.1	50.0	13.9	100.0(108)	
보육	33.0	47.9	19.1	100.0(94)	
기관					
전체	30.1	44.1	25.8	100.0(791)	20.9(2)***
유치원	28.5	38.7	32.8	100.0(393)	
어린이집	31.7	49.5	18.8	100.0(398)	
부모					
전체	63.4		36.6	100.0(786)	5.4(1)*
유치원	59.4		40.6	100.0(394)	
어린이집	67.3		32.7	100.0(392)	

* p< .05, *** p< .001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제 3의 부처 업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26.1%,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11.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집단, 학계전문가, 기관의 유아교육 담당과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0-80%이상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육담당자도 71.8%,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집단의 53.1%도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계전문가들은 유아교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가 81.5%로 나타났으며, 보육은 교육부로 업무 일원화가 47.3%, 제 3부처로 업무 일원화가 40.5%로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부모 집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5.5%, 44.8%로 가장 많았다. 다만 어린이집 부모의 경우에는 '제 3부처로 업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7%로 유치원 부모 응답률(2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6〉 육아지원기관 관할 부처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교육부로 업무 일원화	복지부로 업무 일원화	제3의 부처로 업무 일원화	계
전체	62.5	11.4	26.1	100.0(1,350)
공무원				
전체	80.7	8.6	10.7	100.0(140)
유아교육	89.9	4.3	5.8	100.0(69)
보육	71.8	12.7	15.5	100.0(71)
학계				
전체	66.3	5.4	28.3	100.0(166)
유아교육	81.5	0.0	18.5	100.0(92)
보육	47.3	12.2	40.5	100.0(74)
기관				
전체	63.9	11.4	24.7	100.0(562)
유치원	76.9	6.7	16.5	100.0(255)
어린이집	53.1	15.3	31.6	100.0(307)
부모				
전체	54.4	14.3	31.3	100.0(482)
유치원	65.5	9.4	25.1	100.0(223)
어린이집	44.8	18.5	36.7	100.0(259)

4) 관리·감독 기관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관리를 받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5%,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24.3%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계전문가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유치원은 30.8%로 어린이집의 20.4% 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

유치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3-7〉 육아지원기관 관리 체계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1.5	44.2	24.3	100.0(1,190)	
공무원					
전체	33.8	38.4	27.8	100.0(198)	5.25(2)
유아교육	40.0	31.0	29.0	100.0(100)	
보육	27.6	45.9	26.5	100.0(98)	
학계					
전체	32.7	51.5	15.8	100.0(202)	0.74(2)
유아교육	34.3	51.9	13.9	100.0(108)	
보육	30.9	51.1	18.1	100.0(94)	
기관					
전체	30.6	43.8	25.6	100.0(790)	11.3(2)**
유치원	28.0	41.2	30.8	100.0(393)	
어린이집	33.2	46.3	20.4	100.0(397)	
부모					
전체	63.0		37.0	100.0(784)	2.6(1)
유치원	60.2		39.8	100.0(392)	
어린이집	65.8		34.2	100.0(392)	

** p< .01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 관리를 받고 있는 현행 체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을 교육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의견이 68.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집단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0% 이상이 어린이집의 교육청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계전문가, 기관, 부모 집단에서는 유아교육에서는 어린이집의 교육청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80%이상으로 높은 반면, 보육에서는 50% 약간 넘는 비율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IV-3-8〉 육아지원기관 관리 체계 차이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의 교육청 관리로 전환	유치원의 지자체 관리로 전환	기타	계
전체	68.7	19.1	12.2	100.0(1,343)
공무원				
전체	82.5	11.2	6.3	100.0(143)
유아교육	81.7	12.7	5.6	100.0(71)
보육	83.3	9.7	6.9	100.0(72)
학계				
전체	70.0	9.4	20.6	100.0(170)
유아교육	81.7	1.1	17.2	100.0(93)
보육	55.8	19.5	24.7	100.0(77)
기관				
전체	68.7	20.3	11.1	100.0(552)
유치원	79.1	14.0	7.0	100.0(258)
어린이집	59.5	25.9	14.6	100.0(294)
부모				
전체	64.2	23.4	12.3	100.0(478)
유치원	75.3	17.2	7.5	100.0(227)
어린이집	54.2	29.1	16.7	100.0(251)

나. 지원체계

유치원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장학지원제도가 없는 현 지원체계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3.8%,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4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행 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1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에서는 유아교육 전공자는 우선 개선 필요와 중장기 개선 필요가 각각 48.1%, 46.3%로 비슷하게 응답한 반면, 보육 전공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집단의 유치원장과 교사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많은 반면, 어린이집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3-9〉 육아지원기관 장학지원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42.3	43.8	13.8	100.0(1,195)	
공무원					
전체	43.9	41.4	14.6	100.0(198)	15.17(2)**
유아교육	53.0	28.0	19.0	100.0(100)	
보육	34.7	55.1	10.2	100.0(98)	
학계					
전체	45.5	49.0	5.4	100.0(202)	0.70(2)
유아교육	48.1	46.3	5.6	100.0(108)	
보육	42.6	52.1	5.3	100.0(94)	
기관					
전체	41.1	43.1	15.7	100.0(795)	18.8(2)***
유치원	48.6	37.1	14.3	100.0(399)	
어린이집	33.6	49.2	17.2	100.0(396)	
부모					
전체	79.4		20.6	100.0(786)	0.0(1)
유치원	79.1		20.9	100.0(392)	
어린이집	79.7		20.3	100.0(394)	

** p< .01, *** p< .001

유치원은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장학지원제도가 없는 현행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과정 장학사를 양성하여 보육과정 장학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47.2%, ‘유치원 장학인력으로 어린이집 장학지도 해야 한다’는 46.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의 유아교육 담당자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장학인력으로 어린이집 장학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집단의 보육 담당자는 유치원 인력으로 어린이집 장학지도와 보육과정 장학사 양성 후 장학지도에 대해 각각 45.5%, 50.0%로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나, 학계 전문가와 기관, 부모들의 경우에는 보육쪽에서 ‘보육과정 장학사 양성

후 장학지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0%로 절반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10〉 육아지원기관 장학지원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 장학인력의 유·보 공동 활용	보육과정 장학인력 별도 양성 필요	기타	계
전체	46.9	47.2	5.9	100.0(1,601)
공무원				
전체	58.9	36.9	4.2	100.0(168)
유아교육	73.8	22.5	3.8	100.0(80)
보육	45.5	50.0	4.5	100.0(88)
학계				
전체	45.5	40.8	13.6	100.0(191)
유아교육	62.7	25.5	11.8	100.0(102)
보육	25.8	58.4	15.7	100.0(89)
기관				
전체	47.7	46.3	5.9	100.0(639)
유치원	59.4	37.0	3.6	100.0(330)
어린이집	35.3	56.3	8.4	100.0(309)
부모				
전체	43.1	52.9	4.0	100.0(603)
유치원	53.2	43.9	3.0	100.0(301)
어린이집	33.1	61.9	5.0	100.0(302)

5) 기관 평가

유치원은 유치원평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질적 수준 관리를 받는 현 관리체계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각각 27.8%, 27.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0%,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계전문가와 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치원이 50.0%로 어린이집(40.1%)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3-11〉 육아지원기관 평가체계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27.8	44.5	27.7	100.0(1,191)	
공무원					
전체	33.0	43.7	23.4	100.0(197)	6.74(2)*
유아교육	40.0	35.0	25.0	100.0(100)	
보육	25.8	52.6	21.6	100.0(97)	
학계					
전체	31.2	52.0	16.8	100.0(202)	0.29(2)
유아교육	29.6	52.8	17.6	100.0(108)	
보육	33.0	51.1	16.0	100.0(94)	
기관					
전체	25.6	42.8	31.6	100.0(792)	3.4(2)
유치원	26.5	39.6	33.8	100.0(396)	
어린이집	24.7	46.0	29.3	100.0(396)	
부모					
전체	55.0		45.0	100.0(782)	7.8(1)**
유치원	50.0		50.0	100.0(390)	
어린이집	59.9		40.1	100.0(392)	

* p< .05, ** p< .01

유치원은 유치원평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 통해 질적 수준 관리를 받는 현행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유치원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평가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3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은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유치원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의견에 50%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공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유치원으로 전환이 39.8%, 유치원 평가를 어린이집 평가제도로 전환이 33.8%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보육 전공자는 '유치원 평가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와 부모 집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집 평가제도 유치원 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12〉 육아지원기관 평가체계 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유치원을 평가인증제로 전환	어린이집을 유치원식 평가로 전환	기타	계
전체	33.1	56.0	10.9	100.0(1,240)
공무원				
전체	32.7	58.0	9.3	100.0(150)
유아교육	33.8	59.5	6.8	100.0(74)
보육	31.6	56.6	11.8	100.0(76)
학계				
전체	42.2	36.1	21.7	100.0(166)
유아교육	36.4	39.8	23.9	100.0(88)
보육	48.7	32.1	19.2	100.0(78)
기관				
전체	27.9	62.5	9.6	100.0(509)
유치원	13.6	75.2	11.2	100.0(250)
어린이집	41.7	50.2	8.1	100.0(259)
부모				
전체	35.9	55.4	8.7	100.0(415)
유치원	23.0	67.9	9.1	100.0(187)
어린이집	46.5	45.2	8.3	100.0(228)

6) 행정 인력

유치원은 행정인력 1인이 80개원, 어린이집은 1인이 49개원을 관리하는 현 체계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 필요하다는 4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44.4%로 나타났다.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9.2%로 상당히

낮게 응답하였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0%로 가장 높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학계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공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 전공자는 우선개선과 중장기 개선이 모두 48.9%로 동일하게 응답되었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도 유치원은 우선 개선과 중장기 개선 필요성이 각각 45.6%, 43.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13〉 육아지원기관 담당 행정인력 수적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44.4	46.4	9.2	100.0(1,191)	
공무원					
전체	54.5	39.9	5.6	100.0(198)	11.98(2)**
유아교육	65.0	28.0	7.0	100.0(100)	
보육	43.9	52.0	4.1	100.0(98)	
학계					
전체	51.0	47.0	2.0	100.0(202)	n. a
유아교육	52.8	45.4	1.9	100.0(108)	
보육	48.9	48.9	2.1	100.0(94)	
기관					
전체	40.2	47.9	11.9	100.0(791)	9.7(2)**
유치원	45.6	43.3	11.1	100.0(397)	
어린이집	34.8	52.5	12.7	100.0(394)	
부모					
전체	81.1	18.9		100.0(789)	0.4(1)
유치원	82.0	18.0		100.0(789)	
어린이집	80.3	19.7		100.0(395)	

** p< .01

유치원은 행정인력 1인이 80개원, 어린이집은 1인이 49개원을 관리하는 현 체

계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무원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 수 확충' 이 29.6%, '업무통합 후 현인력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 모두 담당' 이 22.3%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기관집단에서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 수 확충' 이 각각 67.7%, 49.4%로 가장 높은 반면, 보육은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 수 모두 확충' 이 각각 82.8%,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학계 전문가와 부모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 수 모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3-14 참조).

〈표 IV-3-14〉 육아지원기관 담당 행정인력 수적 차이 개선안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보육공무원수 감소해야함	유아교육 공무원 수 확충	유치원/어린이집 공무원 수 확충	통합 인력으로 유보 동시 관리	계
전체	2.4	29.6	45.7	22.3	100.0(1,684)
공무원					
전체	0.5	36.6	53.2	9.7	100.0(186)
유아교육	1.1	67.7	23.7	7.5	100.0(93)
보육	0.0	5.4	82.8	11.8	100.0(93)
학계					
전체	1.0	22.2	46.0	30.8	100.0(198)
유아교육	0.0	30.2	43.4	26.4	100.0(106)
보육	2.2	13.0	48.9	35.9	100.0(92)
기관					
전체	4.7	34.4	36.8	24.1	100.0(677)
유치원	4.4	49.4	31.4	14.8	100.0(344)
어린이집	5.1	18.9	42.3	33.6	100.0(333)
부모					
전체	0.8	24.7	53.0	21.5	100.0(623)
유치원	0.9	31.6	50.0	17.4	100.0(316)
어린이집	0.7	17.6	56.0	25.7	100.0(307)

다. 기관 설치 및 운영

1) 건물 임대 사용

어린이집은 임대건물 사용이 가능한 반면, 유치원은 임대건물 불가능한 현실 설치·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30.5%,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18.8%로 나타났다.

〈표 IV-3-15〉 육아지원기관 임대건물 허용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0.5	50.7	18.8	100.0(1,190)	
공무원					
전체	39.4	43.9	16.7	100.0(198)	1.57(2)
유아교육	43.0	43.0	14.0	100.0(100)	
보육	35.7	44.9	19.4	100.0(98)	
학계					
전체	28.7	60.4	10.9	100.0(202)	3.64(2)
유아교육	34.3	56.5	9.3	100.0(108)	
보육	22.3	64.9	12.8	100.0(94)	
기관					
전체	28.7	49.9	21.4	100.0(790)	41.4(2) ***
유치원	39.0	42.6	18.4	100.0(397)	
어린이집	18.3	57.3	24.4	100.0(393)	
부모					
전체	61.6		38.4	100.0(781)	2.4(1)
유치원	64.3		35.7	100.0(392)	
어린이집	58.9		41.1	100.0(389)	

*** p< .001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 유아교육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3.0%씩 동일하게 응답한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 집

단은 유아교육, 보육 전공자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 집단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집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 없이 모두 중장기 개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어린이집이 24.4%로 유치원의 18.4%보다 높게 나타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15 참조).

어린이집은 임대건물 사용이 가능한 반면, 유치원은 임대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현 설치·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임대건물 사용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임대건물 사용 허가해야 한다'가 26.5%로 나타났다.

〈표 IV-3-16〉 육아지원기관 임대건물 허용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임대건물 사용 불허해야 함	유치원 임대건물 사용 허가해야 함	기타	계
전체	68.5	26.5	5.0	100.0(1,405)
공무원				
전체	78.8	18.2	3.0	100.0(165)
유아교육	86.0	11.6	2.3	100.0(86)
보육	70.9	25.3	3.8	100.0(79)
학계				
전체	78.3	17.8	3.9	100.0(180)
유아교육	84.7	13.3	2.0	100.0(98)
보육	70.7	23.2	6.1	100.0(82)
기관				
전체	68.2	27.2	4.6	100.0(591)
유치원	78.6	19.8	1.6	100.0(313)
어린이집	56.5	35.6	7.9	100.0(278)
부모				
전체	61.6	31.8	6.6	100.0(469)
유치원	73.6	22.0	4.5	100.0(246)
어린이집	48.4	42.6	9.0	100.0(223)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건물 사용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아교육 담당자 86.0%, 보육 담당자 7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며, 이러한 경향은 학계전문가, 기관, 부모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부모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건물 사용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치원 부모는 73.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부모는 48.4%로 응답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3-16 참조).

2) 실외 놀이터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구비가 필수 인 반면, 어린이집은 50명 정원 이상인 곳만 필수 구비 요건으로 되어 있는 현 설치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IV-3-17〉 육아지원기관 실외놀이터 설치기준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1.0	49.6	19.4	100.0(1,193)	
공무원					
전체	31.8	42.9	25.3	100.0(198)	20.76(2)***
유아교육	46.0	38.0	16.0	100.0(100)	
보육	17.3	48.0	34.7	100.0(98)	
학계					
전체	37.1	52.5	10.4	100.0(202)	4.13(2)
유아교육	42.6	50.0	7.4	100.0(108)	
보육	30.9	55.3	13.8	100.0(94)	
기관					
전체	29.3	50.6	20.2	100.0(793)	58.9(2)***
유치원	41.3	44.3	14.4	100.0(397)	
어린이집	17.2	56.8	26.0	100.0(396)	
부모					
전체		67.4	32.6	100.0(782)	2.1(1)
유치원		69.8	30.2	100.0(391)	
어린이집		65.0	35.0	100.0(391)	

*** p< .001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9.6%로 가장 높았으며,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31.0%,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19.4%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0%로 가장 많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육 담당자의 경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7%로 유아교육의 16.0%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학계 전문가 집단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없이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우선 개선 필요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1.3%, 4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8%로 절반이상 응답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IV-3-17 참조).

〈표 IV-3-18〉 육아지원기관 실외놀이터 설치기준 차이 개선 의견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실외놀이터 설치기준 50명이상으로 완화해야 함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필수조건으로 해야 함	기타	계
전체	22.3	72.9	4.8	100.0(1,456)
공무원				
전체	22.4	74.1	3.4	100.0(147)
유아교육	14.3	84.5	1.2	100.0(84)
보육	33.3	60.3	6.3	100.0(63)
학계				
전체	9.4	86.1	4.4	100.0(180)
유아교육	10.0	87.0	3.0	100.0(100)
보육	8.8	85.0	6.3	100.0(80)
기관				
전체	28.1	66.5	5.4	100.0(609)
유치원	19.3	77.4	3.3	100.0(332)
어린이집	38.6	53.4	7.9	100.0(277)
부모				
전체	19.8	75.5	4.7	100.0(520)
유치원	19.0	78.1	3.0	100.0(251)
어린이집	20.7	72.9	6.4	100.0(269)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구비가 필수인 반면, 어린이집은 50명 정원 이상인 곳만 필수 구비 요건으로 되어 있는 현 설치기준을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도 실외놀이터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도 실외놀이터 설치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22.3%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어린이집도 실외놀이터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공무원 집단과 기관의 보육 담당자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도 실외놀이터 설치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이상으로 유치원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IV-3-18 참조).

3) 연간 운영 주기

어린이집은 1월1일-12월 말까지 회기 운영되고, 유치원은 3월 1일-2월말 학년 제도로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체 41.2%정도로 높게 나왔으며,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38.6%,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20.3%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41.4% 가장 많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계전문가들은 유아교육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가 50.0%, 보육에서는 '중장기 개선 필요'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27.4%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1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V-3-19〉 육아지원기관 운영일정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8.6	41.2	20.3	100.0(1,193)	
공무원					
전체	36.5	39.6	23.9	100.0(197)	5.70(2)
유아교육	41.4	31.3	27.3	100.0(99)	
보육	31.6	48.0	20.4	100.0(98)	
학계					
전체	43.1	47.0	9.9	100.0(202)	7.72(2)*
유아교육	50.0	38.0	12.0	100.0(108)	
보육	35.1	57.4	7.4	100.0(94)	
기관					
전체	37.9	10.4	22.0	100.0(794)	13.3(2)**
유치원	35.4	37.2	27.4	100.0(398)	
어린이집	40.4	42.9	16.7	100.0(396)	
부모					
전체	69.6		30.4	100.0(786)	0.6(1)
유치원	68.4		31.6	100.0(392)	
어린이집	70.8		29.2	100.0(394)	

* p< .05, ** p< .01

어린이집은 1월1일-12월 말까지 회기 운영되고, 유치원은 3월 1일-2월말 학년 제도로 학사일정을 진행되어 있는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의 법적운영일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법적운영일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1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기관, 부모 집단에서도 '유치원의 법적운영일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보육 담당자가 '어린이집의 법적운영일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의 40.3%로 응답해 유아교육 담당자(1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3-20〉 육아지원기관 운영일정 차이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일정으로 통일	유치원 운영일정으로 통일	기타	계
전체	18.7	77.6	3.7	100.0(1,467)
공무원				
전체	26.2	70.5	3.4	100.0(149)
유아교육	11.1	84.7	4.2	100.0(72)
보육	40.3	57.1	2.6	100.0(77)
학계				
전체	18.7	76.4	4.9	100.0(182)
유아교육	14.7	81.1	4.2	100.0(95)
보육	23.0	71.3	5.7	100.0(87)
기관				
전체	15.4	82.1	2.5	100.0(599)
유치원	11.1	86.1	2.9	100.0(280)
어린이집	19.1	78.7	2.2	100.0(319)
부모				
전체	20.3	74.8	1.9	100.0(537)
유치원	18.9	76.2	4.9	100.0(265)
어린이집	21.7	73.5	4.8	100.0(272)

4) 입학(입소) 우선 순위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 근로자 자녀 등 입소 순위가 있으나 유치원은 이러한 제도가 없는 현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1%,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23.9%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유아교육 담당자와 보육 담당자 40%이상이 높게 응답하였고, 학계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동일 집단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만 기관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유아교육은 32.2%로 어린이집의 18.3%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유치원 부모들이 35.5%로 어린이집 부모들의 28.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3-21〉 육아지원기관 입소 우선순위 제도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6.1	40.0	23.9	100.0(1,190)	
공무원					
전체	41.8	38.8	19.4	100.0(196)	3.52(2)
유아교육	40.8	34.7	24.5	100.0(98)	
보육	42.9	42.9	14.3	100.0(98)	
학계					
전체	33.7	43.1	23.3	100.0(202)	3.14(2)
유아교육	37.0	44.4	18.5	100.0(108)	
보육	29.8	41.5	28.7	100.0(94)	
기관					
전체	35.2	39.5	25.3	100.0(792)	20.2(2)***
유치원	32.0	35.8	32.2	100.0(394)	
어린이집	38.4	43.2	18.3	100.0(398)	
부모					
전체	68.1		31.9	100.0(784)	4.6(1)*
유치원	64.5		35.5	100.0(392)	
어린이집	71.7		28.3	100.0(392)	

* $p < .05$, *** $p < .001$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 근로자 자녀 등 입소 순위가 있으나 유치원은 이러한 제도가 없는 현 운영체제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한 입소 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불필요하다'는 2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한 입소 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불필요하다'에 유아교육 담당자는 79.5%, 보육 담당자는 86.6%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다.

〈표 IV-3-22〉 육아지원기관 입소 우선순위 제도 개선 의견

단위: %(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 입소순위 동일화 필요	유치원·어린이집 입소순위 동일화 불필요	기타	계
전체	68.4	26.7	4.9	100.0(1,418)
공무원				
전체	69.6	24.7	5.7	100.0(158)
유아교육	64.9	23.0	12.2	100.0(74)
보육	73.8	26.2	0.0	100.0(84)
학계				
전체	82.6	9.0	8.4	100.0(155)
유아교육	79.5	11.4	9.1	100.0(88)
보육	86.6	6.0	7.5	100.0(67)
기관				
전체	65.7	28.6	5.7	100.0(577)
유치원	63.6	28.4	8.0	100.0(261)
어린이집	67.4	28.8	3.8	100.0(316)
부모				
전체	66.9	30.5	2.7	100.0(528)
유치원	65.7	31.1	3.2	100.0(251)
어린이집	67.9	30.0	2.2	100.0(277)

5) 일일 운영 기준 시간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3, 5, 8시간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 운영체제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증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증장기 개선이 필요하다(38.4%)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35.0%)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6.6%로 응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8.0%, 34.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보육 담당자는 증장기 개선이 필요하다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계 전문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 모두 증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50%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에서는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어린이집 보다 (16.4%) 매우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유치원 부모들이 41.6%로 어린이집 부모들의 26.0%에 비해 높게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표 IV-3-23〉 육아지원기관 운영시간 규정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5.0	38.4	26.6	100.0(1,194)	
공무원					
전체	37.9	37.9	24.2	100.0(198)	13.14(2)**
유아교육	38.0	28.0	34.0	100.0(100)	
보육	37.8	48.0	14.3	100.0(98)	
학계					
전체	30.2	49.5	20.3	100.0(202)	4.44(2)
유아교육	34.3	42.6	23.1	100.0(108)	
보육	25.5	57.4	17.0	100.0(94)	
기관					
전체	35.5	35.6	28.8	100.0(794)	66.8(2)***
유치원	25.4	33.2	41.3	100.0(397)	
어린이집	45.6	38.0	16.4	100.0(397)	
부모					
전체	66.2		33.8	100.0(790)	21.5(1)***
유치원	58.4		41.6	100.0(394)	
어린이집	74.0		26.0	100.0(396)	

** p< .01, *** p< .001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 운영을 기본 있고, 유치원은 3, 5, 8시간 및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 운영체제에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가 전체 69.2%, ‘유치원을 종일을 기본운영으로 해야 하다는 의견이 27.2%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 학계 집단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 모두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유치원을 종일을 기본운영으로 해야 하다는 의견에서 보육 담당 공무원은 42.2%로 유아교육(27.3%)에 비해 높게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기관 집단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70-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집단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과 부모집단에서 ‘유치원을 종일을 기본운영으로 해야 하다는 의견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24〉 육아지원기관 운영시간 규정 차이 개선안 의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필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함	기타	계
전체	69.2	27.2	3.6	100.0(1,372)
공무원				
전체	60.4	35.6	4.0	100.0(149)
유아교육	63.6	27.3	9.1	100.0(66)
보육	57.8	42.2	0.0	100.0(83)
학계				
전체	70.8	21.1	8.1	100.0(161)
유아교육	61.4	27.7	10.8	100.0(83)
보육	80.8	14.1	5.1	100.0(78)
기관				
전체	79.2	16.8	4.0	100.0(549)
유치원	78.0	17.6	4.4	100.0(227)
어린이집	80.1	16.1	3.7	100.0(322)
부모				
전체	60.6	37.8	1.6	100.0(513)
유치원	64.6	34.1	1.3	100.0(226)
어린이집	57.5	40.8	1.7	100.0(287)

라. 재정

1) 비용 지원 기준

유치원은 반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은 종일 활동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지원체계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4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37.1%,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18.3%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6%로 가장 높은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5.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학계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공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9%, 보육 전공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 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보육 전공자는 23.4%로 유아교육(17.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서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우선개선이 필요하다는 51.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8%,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3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V-3-25〉 육아지원기관 비용지원 기준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44.6	37.1	18.3	100.0(1,194)	
공무원					
전체	47.7	36.0	16.2	100.0(197)	17.78(2)***
유아교육	62.6	26.3	11.1	100.0(99)	
보육	32.7	45.9	21.4	100.0(98)	
학계					
전체	40.1	45.0	14.9	100.0(202)	17.61(2)***
유아교육	51.9	40.7	7.4	100.0(108)	
보육	26.6	50.0	23.4	100.0(94)	
기관					
전체	45.0	35.3	19.6	100.0(795)	12.5(2)**
유치원	51.3	31.2	17.6	100.0(398)	
어린이집	38.8	39.5	21.7	100.0(397)	
부모					
전체	74.7		25.3	100.0(790)	2.2(1)
유치원	77.0		23.0	100.0(395)	
어린이집	72.4		27.6	100.0(395)	

** p< .01, *** p< .001

유치원은 반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은 종일 활동을 기준으로 적용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

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 기준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68.7%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반일기준으로 지원해야한다'가 2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부모 집단 모두 유아교육과 보육에 상관없이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 기준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60-70%로 높게 나타났다(표 IV-3-26 참조).

〈표 IV-3-26〉 육아지원기관 비용지원 기준 차이 개선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육료 반일기준 지원	교육비 종일기준 지원	기타	계
전체	25.2	68.7	6.0	100.0(1,526)
공무원				
전체	24.2	71.5	4.2	100.0(165)
유아교육	17.0	77.3	5.7	100.0(88)
보육	32.5	64.9	2.6	100.0(77)
학계				
전체	19.2	69.2	11.6	100.0(172)
유아교육	16.0	74.0	10.0	100.0(100)
보육	23.6	62.5	13.9	100.0(72)
기관				
전체	30.9	61.3	7.8	100.0(612)
유치원	26.1	68.2	5.7	100.0(314)
어린이집	35.9	54.0	10.1	100.0(298)
부모				
전체	21.3	75.7	2.9	100.0(577)
유치원	20.9	76.4	2.7	100.0(297)
어린이집	21.8	75.0	3.2	100.0(280)

2) 교육비/보육료 책정 방식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시간별 차등지불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차등지불이 불가능한 현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는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7%,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가 39.9%로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20.3%

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유아교육 담당자는 우선개선이 필요하다는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육 담당자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27〉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별 비용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39.7	39.9	20.3	100.0(1,190)	
공무원					
전체	43.1	36.9	20.2	100.0(195)	3.74(2)
유아교육	49.5	30.9	19.6	100.0(97)	
보육	36.7	42.9	20.4	100.0(98)	
학계					
전체	40.1	48.5	11.4	100.0(202)	1.56(2)
유아교육	43.5	44.4	12.0	100.0(108)	
보육	36.2	53.2	10.6	100.0(94)	
기관					
전체	38.8	38.5	22.7	100.0(793)	2.3(2)
유치원	39.9	35.9	24.1	100.0(398)	
어린이집	37.7	41.0	21.3	100.0(395)	
부모					
전체	71.4	28.6		100.0(790)	0.4(1)
유치원	70.4	29.6		100.0(395)	
어린이집	72.4	27.6		100.0(395)	

학계 유아교육 전문가는 우선개선이 필요하다는 43.5%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44.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보육 전문가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53.2%로 절반 이상 응답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기관 집단에서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우선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9%,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 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7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3-27 참조).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시간별 차등지불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차등지불이 불가능한 현 체제를 개선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집단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60-70%이상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보육이 유아교육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집단에서는 유치원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치원 교육비를 종일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3-28 참조).

〈표 IV-3-28〉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별 비용 차이 개선 의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시간 따른 차등적용 필요	유치원 교육비 종일기준으로 동일적용 필요	계
전체	59.4	40.6	100.0(1,490)
공무원			
전체	61.3	38.7	100.0(155)
유아교육	59.0	41.0	100.0(78)
보육	63.6	36.4	100.0(77)
학계			
전체	74.3	25.7	100.0(179)
유아교육	70.5	29.5	100.0(95)
보육	78.6	21.4	100.0(84)
기관			
전체	64.0	36.0	100.0(600)
유치원	61.2	38.8	100.0(294)
어린이집	66.7	33.3	100.0(306)
부모			
전체	49.1	50.9	100.0(556)
유치원	52.6	47.4	100.0(272)
어린이집	45.8	54.2	100.0(284)

3) 보육료 상한제와 교육비 자율제

유치원 교육비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현행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관의

원장과 교사 집단에서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1%,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 39.3%,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가 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29〉 육아지원기관 비용 규제(상한제) 차이 개선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우선 개선 필요	중장기 개선 필요	현행 유지 필요	계	$\chi^2(df)$
전체	45.1	39.3	15.6	100.0(1,194)	
공무원					
전체	38.8	45.9	15.3	100.0(197)	11.21(2)**
유아교육	62.6	28.3	9.1	100.0(99)	
보육	38.8	45.9	15.3	100.0(98)	
학계					
전체	44.1	50.0	5.9	100.0(202)	1.05(2)
유아교육	40.7	52.8	6.5	100.0(108)	
보육	47.9	46.8	5.3	100.0(94)	
기관					
전체	44.0	37.1	18.9	100.0(795)	10.8(2)**
유치원	45.5	32.2	22.4	100.0(398)	
어린이집	42.6	42.1	15.4	100.0(397)	
부모					
전체	78.0		22.0	100.0(790)	3.9(1)*
유치원	75.1		24.9	100.0(393)	
어린이집	80.9		19.1	100.0(397)	

* $p < .05$, ** $p < .01$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의 유아교육 담당자는 62.6%가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높게 응답하였다. 반면 보육 담당자는 45.9%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났다. 학계 집단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 전공자는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47.9%)와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46.8%)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5.5%,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집이 중장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1%로 유치원(32.2%) 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 집단에서는 '개선필요-현행 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80%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

원이 24.9%로 어린이집의 19.1%에 비해 약간 높게 응답해 차이를 나타냈다(표 IV-3-29 참조).

유치원 교육비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선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 교육비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기관자율화가 필요하다'는 24.3%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 '유치원 교육비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유아교육 담당자가 94.4%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 담당자는 80.5%로 나타났다. 학계전문가, 기관, 부모 집단에서도 '유치원 교육비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학계 집단에서는 보육전공자가 58.4%로 유아교육 전공자(5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3-30〉 육아지원기관 비용 규제(상한제) 차이 개선 의견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교육비 상한제 필요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필요	기타	계
전체	73.5	24.3	2.2	100.0(1,602)
공무원				
전체	87.8	11.6	0.6	100.0(172)
유아교육	94.4	4.4	1.1	100.0(90)
보육	80.5	19.5	0.0	100.0(82)
학계				
전체	55.3	37.4	7.4	100.0(190)
유아교육	52.5	37.6	9.9	100.0(101)
보육	58.4	37.1	4.5	100.0(89)
기관				
전체	64.4	33.4	2.2	100.0(634)
유치원	70.9	26.2	3.0	100.0(302)
어린이집	58.4	40.1	1.5	100.0(332)
부모				
전체	84.7	14.4	1.0	100.0(606)
유치원	84.8	13.8	1.4	100.0(289)
어린이집	84.5	14.8	0.6	100.0(317)

4. 통합 유형 선호

세계 여러 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 모형의 다양한 방식 중 우리나라 통합 추진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해 각 집단별로 질문하였다.

각 모델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뉴질랜드는 5세 취학제도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교육부가 두 기관 모두를 관할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교육과정 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이 통합되고 지원도 동일하나 운영 철학이나 운영시간에 따라 두 기관이 구분되게 된다. 이용 영유아 연령은 어린이집은 0~4세, 유치원은 3~4세이다. 둘째, 스웨덴 형은 7세 취학제도이며, 취학전 전연령의 영유아가 단일한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며 이를 교육과학부가 관할하는 방식이다. 1세부터 6세까지 모든 연령의 아동이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기관(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 기관은 교육과학부 관할 업무로 되어 있다. 셋째 덴마크 형은 7세 취학제도이며,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구분되나 이들은 모두 사회부 관할이며, 6세를 위한 예비초등교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방식으로 취학 직전 6세는 교육부 관할인 예비초등교실에 다니게 된다. 넷째 핀란드 형은 7세 취학제도로 연령별로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을 다른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방식, 즉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있고 6세를 위한 유아학교가 있다. 보육시설은 사회보건부 소관 업무인 반면 1년 과정인 유아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다. 다섯째 독일/프랑스 형은 6세 취학제도로, 연령별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기관을 구분하며,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나 구분연령이 핀란드와는 다르게 만 3세미만 영아는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 소관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만 3세 이상 유아는 교육과학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31.1%가 스웨덴 모형을 적절하다고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은 독일/프랑스 모형이 21.4%, 뉴질랜드 모델이 19.7%, 덴마크 모형이 12.4%, 핀란드 모형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은 유아교육 담당자는 독일/프랑스 모형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보육 담당자는 스웨덴 모형을 선택하였다. 학계전문가는 유아교육과 보육 전공자 모두 스웨덴 모형을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하였으며, 유아교육 전공자는 뉴질랜드와 독일/프랑스 모형에 대한 선택비율이 보육전공자는 덴마크와 핀란드 모형에 대한 선택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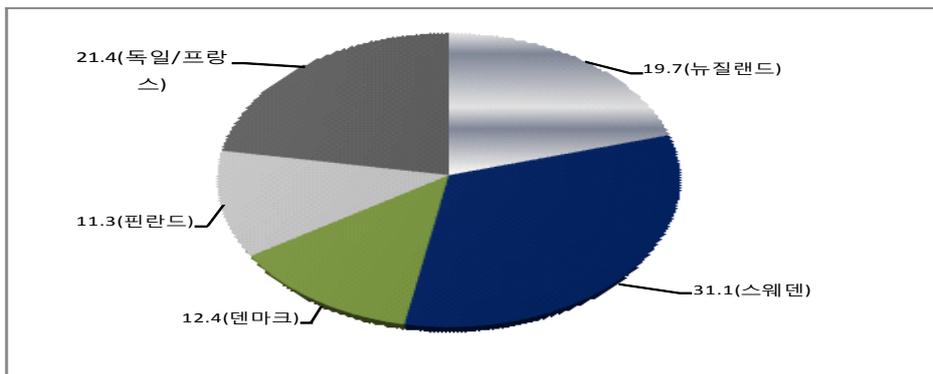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서는 유치원장은 독일/프랑스 모형을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한 반면, 어린이집원장은 스웨덴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해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는 독일/프랑스 모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어린이집은 스웨덴 모형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표 IV-4-1〉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형 도입 적절성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뉴질랜드형	스웨덴형	덴마크형	핀란드형	독일/프랑스형	기타	계	$\chi^2(df)$
전체	19.7	31.1	12.4	11.3	21.4	4.2	100.0(1,919)	
공무원								
전체	14.6	34.3	8.6	11.1	25.8	5.6	100.0(198)	9.7(5)
유아교육	13.0	27.0	8.0	11.0	34.0	7.0	100.0(100)	
보육	16.3	41.8	9.2	11.2	17.3	4.1	100.0(98)	
학계								
전체	11.4	41.1	8.4	8.4	21.8	8.9	100.0(202)	20.5(5)**
유아교육	14.8	43.5	5.6	2.8	27.8	5.6	100.0(108)	
보육	7.4	38.3	11.7	14.9	14.9	12.8	100.0(94)	
기관								
전체	20.7	29.5	9.5	11.6	24.1	4.7	100.0(760)	61.6(5)***
유치원	15.7	25.7	9.7	7.9	34.9	6.0	100.0(381)	
어린이집	25.6	33.2	9.2	15.3	13.2	3.4	100.0(379)	
부모								
전체	22.3	29.1	17.4	11.9	17.4	2.0	100.0(759)	33.4(5)***
유치원	22.2	23.2	17.0	10.7	24.5	2.3	100.0(383)	
어린이집	22.3	35.1	17.8	13.0	10.1	1.6	100.0(376)	

** p< .01, *** p< .001



[그림 IV-4-10]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형 선호도

V. 유아교육과 보육 행·재정 통합 전략

앞서 살펴본 행·재정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 OECD의 권고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의 필요성을 재론하지 않고자 하며, 연구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와 제공자, 정책집행자 및 전문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그 현실적 타당성을 찾고자 한다.

의견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든 부모이든, 학계 전문가이든 간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육은 둘로 나누어지기보다 통합된 하나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79.3%가 찬성하였으며, 행정부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다수 관련자들은 영유아들이 놀면서 쉬면서 배우고 발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반드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그 출발점이 다르고 근원적 설립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본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둘 간 통합의 타당성을 찾고자 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사양성을 해온 교수집단(학계)에서 83~96.3%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된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관할 부처 통합에 대해 어떤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학문적으로 보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다른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관할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통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처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75%가 넘는 비율로 찬성하고 있다(<표 IV-1-19> 참조).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전략 수립의 원칙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 체계와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 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최대한 따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와 영유아의 이익 및 그들의 선호를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영역의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어야 하고 그 영유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들 부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도를 통해 손익을 따져보는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라 하겠다.

그에 비해 학계 전문가는 교사양성기관 종사자이므로 교사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흐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익집단이다. 정책에 따라 기관의 운영 양상이 달라지고 영유아의 선택에 따라 희비가 좌우되는 입장이므로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이익집단이라고도 하겠다.

공무원의 경우는 위의 두 집단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익에 큰 비중을 두는 집단은 아니다. 업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나 공무원은 자리에 따라 업무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직업이므로 상대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측 공무원과 보육 측 공무원은 성격이 다른데,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장학사, 연구사 등의 직위로 이들은 유치원 교사출신이고 향후 유치원 원장, 원감 등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라 유치원의 이익과 무관하게 완전히 객관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관할 정부 부처가 유·보에 따라 나뉘어 있다가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된 사례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다.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애당초 복지 지향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 중심 부처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해왔고 경우에 따라 교육부

로 업무가 완전히 이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던 영국의 경우는 두 부처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가 동일 부처의 업무로 합쳐진 경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인위적인 노력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관련 부처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간 행정·재정적 통합을 이룬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가 거친 두 부처간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로부터 현실적인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론은 가치 지향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간 차이를 드러내는 데 먼저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이가 현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선된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찾아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과정이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조사는 기존 어떤 연구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관련자 집단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전문가, 현장 관련자, 공무원, 부모 등 네 개 집단을 모두 포함하였고 특히 공무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은 표집 수를 최대한 늘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 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내려진 결론은 의견조사 결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외국 사례에만 전적으로 의거한 것도 아니며 다수가 객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한 방향에서 제안되었다. 바람직하다는 가치는 결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가 로드맵과도 같은 행정·재정적 단기 및 중기 통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상적이거나 적절하다고 보는 다양한 방안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가장 필요하고 실현이 가능하다고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1-2개의 방안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거해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이 꼽은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제도'의 도입이다.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5세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현 체제 하에서 유치원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게 될 교육청은 장학사 제도가 있고 이들은 그간 유아교육 교사 지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새롭게 도입되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장학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장학사가 관리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실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장학이나 인근 기관과 함께 구역별로 상호간 장학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전문인력을 장학 관련 연수를 받게 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경험이 풍부한 교육청 전문 장학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겠으나 실제로 장학사 인력으로는 유치원만을 장학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학사 1명당 교사 195명을 장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인력 등 어린이집 장학전문 인력단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연계하고 장학사의 지원을 받아 장학지도에 대한 연수를 거친 후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장학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학의 준비 및 후속 조치는 교육청의 그것에 준하여 교육청의 방침을 따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장학과 자율장학을 권고하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점이 우선 개선 필요 사안으로 꼽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표 II-1-3>) 유치원 담당 인력이 보육 담당 인력에 비해 더 많은 기관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보육 업무는 더 많은 연령의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에도 복잡한 행정 및 지원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도 하여 단순한 비교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수준의 인력으로는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과 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지원 인력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우선 개선 필요 사안에 지적되었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해당되고 있는 '보육료 상한제'라는 비용규제를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고, 더불어 유치원은 반일제, 어린이집은 종일반 기준으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의 학비가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것이 이와 같은 개선에 대한 요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종일반 비용을 따로 받고 있는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이용시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우선 개선 필요 사안으로 꼽혔다.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볼 때,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종일 원칙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5~6시간만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용시간에 따라 2~3 단계로 차등하여 유치원과 동일하게 기본 시간을 정하고 기본 시간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균일하게 책정하도록 한다. 기본시간에 대해서는 유치원에도 기준이 되는 비용 또는 상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용 지원 기준 시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하게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관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를 연간 기준 일정으로 두고 있으나 유치원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학년도로 정하여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차이가 있다. 5세 누리과정의 공동 추진을 비롯하여 향후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수용하게 되면 연간 운영 주기는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 참여자들의 우선 개선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향후 2~3년 이내 단기 우선 추진 전략으로 들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V-3-1>과 같다. 단기 우선 추진 전략은 현행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둘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통합을 바라본다면 단기에 착수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다.

<표 V-3-1>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을 위한 단기 전략

사안	현행	개선전략
장학제도 확대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실시	-보육 장학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어린이집 장학 추진
이용시간별 비용책정	-유치원은 기본 반일제+종일제 추가 비용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일원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기본과 연장/야간까지 구분하여 비용 책정
비용 지원 기준 시간	-유치원은 반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은 종일 기준 지원	-어린이집도 기본 시간에 한한 지원 -유치원 지원비에 급식포함
비용 규제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유치원 교육비 자율 책정	-유치원에도 기본 시간에 대한 교육비 기준 제시
연간 일정 차이	-어린이집 1월 1일 시작 -유치원 3월 1일 시작	-두 기관 동일하게 3월 1일 시작

4.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중기 전략

중기는 3년 이후 6년 정도까지의 기간으로 초기 유·보 간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기대하는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단일 부처의 행·재정 업무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두 번째 안은 두 개의 부처가 각각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나누어 관할하는 현재와 비슷한 체제이나 이를 조금 개선한 경우이다. 각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제1안: 1부처 2체제 안

단일 부처로 두 가지 업무가 통합된다고는 하나, 본 연구에서 내리는 결론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완전히 하나의 기관으로 병합되기 보다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 병행 유지되는 형태의 통합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중기 이후 협의를 거쳐 단일 체계로 변환될 지는 장기적 논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견조사의 결과와 영유아에 대한 교육 강조와 교육부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세계적인 경향, 그리고 병행 유지 통합의 이상적 모습을 보여준 뉴질랜드의 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교육부(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업무로 이행되는 청사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앞 장의 <표 IV-3-6>과 <표 IV-3-8>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2.5%가 교육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지지하였고 68.7%가 어린이집도 교육청 관할 학교 체제 속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지자체 보육공무원 중 71.8%가 교육부로의 보육업무 일원화를 지지하여 보육사업이 가야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뉴질랜드의 통합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육업무를 맡았던 사회복지부와 유아교육을 관할했던 교육부의 장관이 함께 합동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행정서비스를 교육부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안의 공시를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실무 회의에서 전달체계 등 각종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와 교육과정이 동일한 유치원 업무와 보육 업무가 나란히 교육부의 관할 업무로 각각 자리를 잡았다. 통합 전의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간 큰 차이는 재정구조가 달라 예산 지원 등 조정해야 할 사안이 무수히 많고 복잡하다는 점일 것이다.

위와 같이 조사와 검토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보육사업이 이전되는 경우 통합의 전략들을 각 관련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행정

행·재정 측면의 통합 전략 제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가수준 커리큘럼이 동일하고 교사 또한 동일한 자격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³⁾. 기존 5세 누리과정의 실시나 뉴질랜드의 통합 사례에서 보더라도 커리큘럼의 통합이나 교사 통합, 또는 그와 관련한 합의가 우선되지 않

3)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전략 연구로 본 연구 외에 1) 교육과정 통합 전략, 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 통합 전략 연구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은 상황에서는 행·재정 통합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 법, 조직 및 전달체계

보육이 교육부의 업무로 이관될 경우, 이에 관련된 법규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절차적 과정은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전략들을 보면, 가장 먼저 교육부에 '영유아보육과'가 설립되어야 하는 바, 이는 영유아교육국 하에 유아교육과와 영유아보육과(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지원과 등)를 같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교육 전달체계에 속하게 되고 교육법과 교육행정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동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이 되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법규가 다를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의 보육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수행한다.

2) 기관 운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일일 5~6시간 동안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반일제(현 명칭으로는 연장제) 운영 교육기관으로, 만3~5세 유아들이 다닐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까지 하는 종일제가 아니므로 취업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어머니의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취업모이더라도 오후에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으며 오후 3시정도면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은 0~만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일제 보육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취원하도록 한다. 운영은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일부는 더 늦은 밤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그 시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취업모에 한 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나. 재정

1) 예산

새로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업무로 보육이 이양되면서, 모든 보육관련 재

정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보육과의 담당 업무가 된다. 각 필요 예산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육료지원은 유치원의 유아 학비지원과 동일하게 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 즉, 지방 교육청이 보육료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지원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국고에서 동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고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유아보육과에서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인건비는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필요 지원액을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전입시켜 집행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교사 수당지원이나 시설운영지원 등 필요예산은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분배된다.

2) 교육비·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유치원의 경우 공립(3개의 국립 포함)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다. 공립유치원의 교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 체계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받는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반일에 해당하는 학비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 연령을 모두 무상 교육·보육하기로 했다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 70%까지 지원한다면 해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단 진행된다면, 모든 5세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3, 4세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비지원 3, 4세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학비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현재와 달라지는 바가 없다. 다만 종일반을 하지 않으며 종일반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되는 바이다. 반일제 기준으로 교육비를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크게 국공립, 법인(직장포함), 민간, 가정으로 구분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각 지자체 소속 공무원(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추후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인건비는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부)가 국비에서 50%, 지자체(시·도청 및 시·군·구청 지자체 설립 기관 인건비 지원)에서 50%로 총 100% 지급하도록 하고 인건비 수준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공립유치원 교사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인력부분의 통합에서 다루어지

겠지만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채용 고시가 있을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종일반이나 이후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즉, 5세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기준 보육료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혹은 무상지원)이 적용되며, 기준 시간 이후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부모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차등 종일반비 지원이 과감하게 적용되어 저소득층은 종일반비 부담이 전혀 없어야 한다. 종일반비 지원 기준은 기본보육시간 비용지원 기준과는 갭이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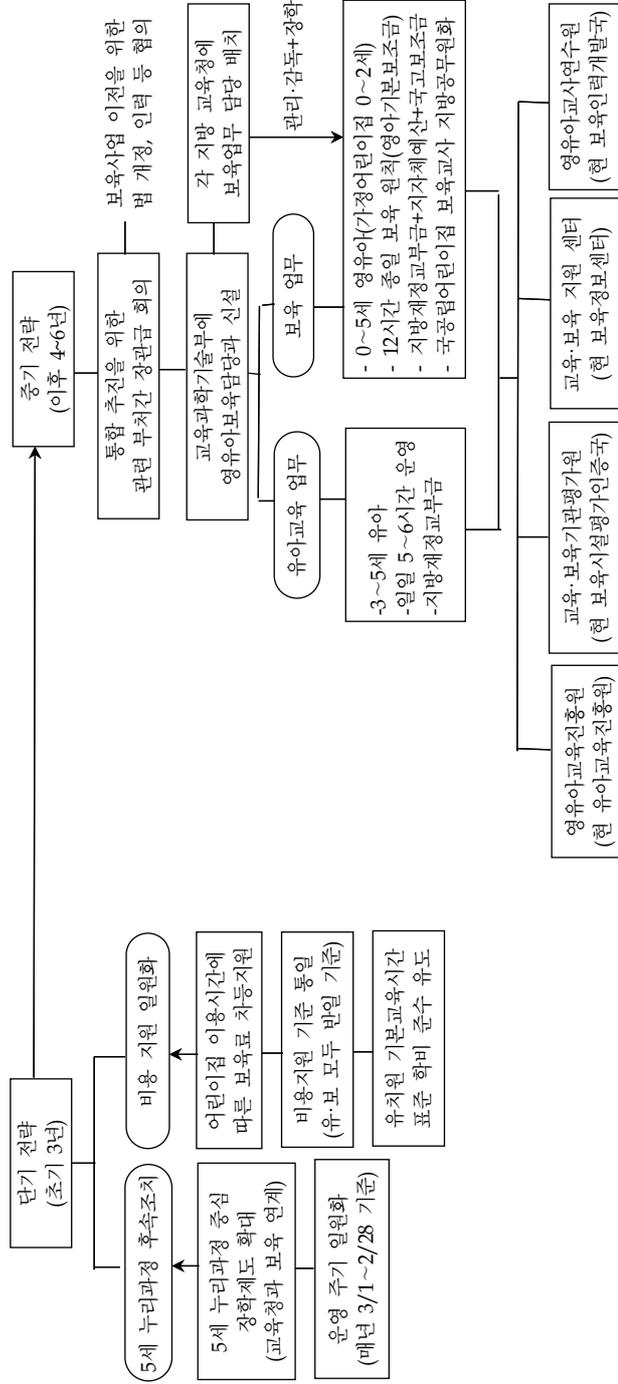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교사의 신분은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보육료 지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이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현재와 같은 기본보조금이 영아에 대해 시설에 주어진 다. 유아에 대해서는 기본 시간(반일제: 오후 3시까지)에 대한 보육료는 국가가 정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종일반비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질 수 있다.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종일반비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만3세 미만의 영아를 종일 보육하는 기관으로 특화한다.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여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교사인건비 충당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영아 기본보조금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단기 및 중기 통합 추진 전략들은 다음의 [그림 V-4-1]에서 도식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행·재정적 측면의 통합은 공통 커리큘럼의 개발과 교사 자격의 동일화 이후 단기적으로는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제도 및 운영 일정 차이 등 내용 측면의 일원화와 비용지원기준, 이용시간별 비용 책정 등 지원기준의 동일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기적으로는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영역을 교육부 내에서 병행적으로 통합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다시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플랜이 된다면 보다 정돈되면서도 질적으로 발전된 통합의 모습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림 V-4-1]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제1안: 1부처 2체제)

나. 제2안: 현행 체제 보완을 위한 2부처 협력안

두 번째 방안은 현재의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제를 겹으로는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행·재정적 분야를 일원화하고 함께 질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효율화해가는 협력 방안이다.

1) 행정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만5세에 대한 전 인구 동일 보육·교육비 지원이 실현될 예정인 바, 실질적으로 5세 한 연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통합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5세에 대해 가정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육·교육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일각에 의하면 만5세뿐만 아니라 만3~4세도 ‘5세 누리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유·보 간 차이가 없는 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실제로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유아 연령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로 통합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을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측면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일한 지원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동일 연령 유아에 대해 최대한 동일한 환경과 수준을 제공하는데 행정적 통합의 방향은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두 영역 간 전달체계나 행정 인력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 체계는 유지하고 다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두 영역 간 행정 현황 비교 결과를 보면, 평가 방식에 있어 유치원은 학교 평가 방식을,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 자체적인 평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진은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평가위원 3~5명이 직접 현장 관찰을 하고 결과서를 제출하는 유치원 평가 방식이 가진 장점을 5년 경력자의 현장관찰과 심의위원으로 이분화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비해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최저선을 넘는 경우에 모두 인증을 해 주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학교식 평가방식으로 가야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관 설치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평가하기도 하는 일원화된 유치원 평가 방식보다는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지자체와는 독립적인 '(재)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총괄하는 형태에 대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동일한 비용지원과 동일한 교육·보육 과정에 기초하여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평가 잣대와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 최적의 평가 방법은 유치원평가 방식의 방법상 우수한 점을 받아들이면서 현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제와 같이 기관평가 자체 사업을 하나의 독립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행정체계는 보육 방식을 받아들이는 상호 보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안이 제도화 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질적 수준의 면에서 동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보육을 선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나 교육적 측면을 선호하여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나 3~5세의 공통 과정 운영과 환경, 교사 수준 등 각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관찰과 최종 평가를 모두 진행할 평가위원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난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해결 방식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수의 20-50% 표집에 의한 평가를 채택하는 것이다. 표집은 난수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긴장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국을 중앙에 하나만 두기보다 전국 조직으로 하여 각 시·도마다 평가위원회를 두고 10년 이상 이 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전담 평가위원단을 출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평가할 것이므로 현재 유아교육 쪽 인력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적 구성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를 전담하게 될 독립기관은 평가인증국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가칭)유치원·어린이집 평가원"라는 의미의 기관 명칭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재정

현 시점에서 정부의 방침을 보면 2012년부터는 5세에 대한 전면 교육·보육

비용 지원을, 2013년부터는 3~4세에 대한 전면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0~2세에 대해서는 소득 70%이하 가구까지 교육비·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3세 이상의 교육비·보육료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2세 이하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비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지원된다. 그러므로 유아에 대한 지원은 교육이,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단 통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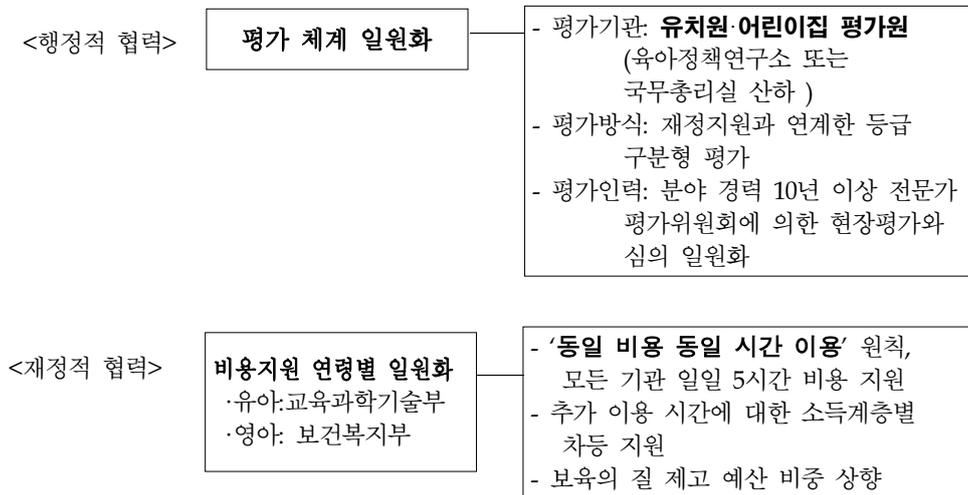
이렇게 부모 대상 비용 지원의 통합에 대해 논할 여지는 이제 없어졌지만, 재정은 비용지원뿐 아니라 기관·시설 운영, 인력, 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예산 책정을 통해 집행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현 체제로 유지가 되고 관할 정부 부처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이를 통합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비용 지원이 연령별로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유치원에 다니는 3~5세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는 같은 비용으로 다른 시간을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30만원으로 유치원은 3~5시간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은 12시간까지 종일 보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자 간 공평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두 기관 간 비용 활용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동일 비용 동일 시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일인당 국가의 비용지원이 최대 5시간까지에 적절한 비용이라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동일 비용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맞벌이 부모의 자녀로서 종일 보육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종일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정 시간(뉴질랜드의 경우는 주당 20시간)에 대해 무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모가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하는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지만 이 때 저소득층인 경우는 종일반비 지원을 통해 다시 비용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에 대해서도 종일반 교사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종일 보육을 지향하고 있고 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비용으로 종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의식으로 맞벌이가 아니면서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장시간 맡긴다든지 일하지 않는 주말에도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태만에 대한 병폐가 심심찮게 만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보육 간 공평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 비용 동일 시간” 지원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용 지원 외에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력, 시설기능보강, 운영지원 등 예산 항목에 있어서 보육 재정과 유아교육 재정 간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유아교육 예산에서는 특히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전체의 2.4%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보육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즉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종사자 보수교육, 보육시설지원에서 교재교구비지원 등이 있으나 이들의 비중은 전체 예산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율이 아닌 예산 액수로도 교육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보육은 이러한 점에 관심을 두고 특히 보육 프로그램 및 장학, 영유아 발달지원 등 커리큘럼 실천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 보다 재정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V-4-2]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두 번째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안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V-4-2]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제2안: 2부처 협력안)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2013 제2주기 유치원평가 추진 계획. 부처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학년도 유아교육예산. 내부자료.
- 김은설·김문정(2010).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시교육청·충남 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종해·백선희·이미정·이원영·임재택(2005).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 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37-85.
-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나정·유희정·문무경·이미화(2000). 유아학교 모형개발연구. 교육부.
-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1차 육아지원 정책방안. 국정과제회의.
-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김은설·김진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양시내(2009).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시범적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이윤진·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20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시범적용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예산.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육사업안내.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보건복지가족부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a).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b).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이정원, 송신영, 김은기, 원종욱(2010b). 평가인증활성화 및 민간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통계.
- 이명환·박수연(2010).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일주(1999).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명림·김진경·박수연(2010).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조희연(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 <http://english.sm.dk/social-issues/children-and-youth/Sider/Start.aspx>
- <http://www.education.gov.uk>
- <http://www.educationcounts.govt.nz>
- <http://www.eng.uvm.dk/>

부록

유치원 평가지표별 평가요소

전문가 및 기관, 공무원용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

<부록1> 유치원 평가지표별 평가 요소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I. 교육 과정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	1. 교육목표가 적합하고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1) 교육목표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조화롭게 포괄하고 있다. 2) 교육목표는 유아, 학부모, 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 교육계획은 생활주제 및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1) 연간(월간), 주간, 일일 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에 연계성이 있다. 2) 교육 내용 및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초등교육과의 연계 포함)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다. 3) 일일교육계획안에는 당일 소주제, 목표, 내용, 준비물 및 방법,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활동 및 평가의 실시·활용	3. 일과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1) 생활(일일)주제에 따라 이야기나누기, 자유선택활동, 환경구성 및 교재·교구 등이 연계성 있게 통합·운영되고 있다. 2)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 활동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다양한 교육활동 유형들 간에 균형을 이루고, 활동양이 적절하다.
		4.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하며,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1) 교육 내용 및 활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2) 교사는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참여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있다. 3)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교구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5. 교육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1)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한다. 2)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3) 유아 발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면담에 활용한다.
II. 교육 환경	실내·외 교육환경의 구성및관리	6. 실내·외 공간 구성 및 시설·설비가 유아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한가?	1) 실내 공간에는 흥미영역의 구성이 적합하며 전시 및 게시가 교육적이다. 2) 실외 공간에는 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영역이 있다. 3) 실내와 시설 및 놀이(구 포함)가 유아의 발달수준 및 유아교육 특성에 적합하다.
	교재교구의 구비 및 제공	7. 유아의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제공·관리하고 있는가?	1) 교재·교구가 발달수준과 주제에 적합하다. 2) 다양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교재·교구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리·관리하고 있다.
III. 건강 및 안전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	8. 유아 건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설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1) 유아를 대상으로 청결·위생지도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 3) 시설·설비(교재·교구 포함)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9. 유아 영양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 균형 있는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다. 3)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다.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	10.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1)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비상대피훈련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2) 유아, 교사 및 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4)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관리하고 있다.
IV. 운영 관리	교직원 인사복지 및 전문성	11. 교직원 인사·보수·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1) 교직원 인사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교직원 보수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3)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비용과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12.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운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1) 장기근속 및 경력 교사의 비율이 적절하다. 2) 원장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한다. 3) 원장은 자체평가 내실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1) 예·결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2)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예산 편성 및 사용 내역이 타당하다. 3) 입학금과 수업료외의 기타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
	가정지역사회 연계 및 종일반 운영	14. 다양한 부모교육·참여활동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1)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2) 유치원의 교육 활동 및 유아의 발달 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3) 유치원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4)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에 만족하고 있다.
		15. 종일반 운영을 위한 지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이 적절한가?	1)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종일제 운영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2) 종일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종일제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4) 종일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부록2> 전문가/공무원/기관용 설문지

유아교육·보육 행·재정 통합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유아정책연구소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중기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의견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유아정책연구소 소 장 조 북 희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조혜주 연구원 02-398-7715, thgid@kicce.re.kr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연령	만 _____세
거주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읍·면 지역
연락처	(지역번호: _____) _____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전문대학(2, 3년제) 졸 <input type="checkbox"/> 3) 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졸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_)		
응답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관련 중앙정부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관련 지자체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중앙정부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지자체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관련 학과 교수, 강사,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장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교사
	<input type="checkbox"/> 보육관련 학과 교수, 강사,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유 아 정 책 연 구 소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

1.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영유아에게 있어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유치원은 교육(education)을 중심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돌봄(care)을 중심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운영 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과 목적이 다르지 않는 기관이므로 동일한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현행: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①	②	③	④	⑤

1-1. 위 1번 문항의 1)~5) 중 '①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②별로 그렇지 않다'로 에 응답하신 항목이 있으시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I.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 및 범

2.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 및 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의견을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선의견에서 ①우선 개선은 3년 이내, ②중장기 개선은 3년 이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른쪽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행정 및 범 체계	개선 필요성			원래의 '개선 필요성'에서 ① 또는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선 개선 필요	② 중장기 개선 필요	③ 현행 유지 필요	
2-1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5세까지,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도 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닐 수 있게 하여 어린이집과 구분을 없앴.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1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③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2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④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4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⑤어린이집은 0세~만2세까지 돌보고, 3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⑥어린이집은 0세~만3세까지 돌보고, 4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⑦어린이집은 0세~만4세, 유치원은 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⑧기타 의견: _____
2-2 유치원은 학교 체계 속하여 교육법을 따르고, 어린이집은 복지시설로서 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이 복지시설로 통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이 학교 체계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두 기관 모두 학교도, 복지시설도 아닌 새로운 범에 의거하도록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의견: _____
2-3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업무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건복지부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새로운 제3의 부처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2-4 어린이집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관리를 받고 유치원은 교육청의 관리를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도 시도 및 시군구청의 관리와 지원을 받도록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III.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계

3.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의견에 필요하다고 표시는지 의견을 해달란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선 의견에서 ①우선 개선은 3년 이내, ②중장기 개선은 3년 이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 개선이 하나만 선택하여 □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유·보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원행의 '개선 필요성'에서 ① 또는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선 개선 필요	② 중장기 개선 필요	③ 현행 유지 필요	
3-1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장학사의 장학지도도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필요성은 느끼나 제도적 장학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장학 인력을 확충하여 어린이집도 같이 장학지도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장학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여 보육과정 장학사를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3-2 유치원은 유치원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원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수준미달인 경우 탈락 후 재인증을 받게 하여 질적 수준 관리를 진행한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평가도 어린이집처럼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유치원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3-3 2011년 통계를 보면, 행정인력의 면에서, 보육은 행정직 공무원 1명이 평균 49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유아교육은 1명 행정공무원이 80개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공무원의 수를 감소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아교육 행정공무원 수를 확충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두 업무 모두 공무원 수를 확충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업무를 통합하여 현재 공무원 수로 유·보 모두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IV.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선의견에서 ①우선 개선은 3년 이내, ②중장기 개선은 3년 이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오른쪽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설치 및 운영	개선 필요성			원편의 개선 필요성에서 ① 또는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선 개선 필요	② 중장기 개선 필요	③ 현행 유지 필요	
4-1 어린이집은 임대 건물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유차원은 임대 건물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임대 건물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도 임대 건물에 운영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4-2 유치원 설립에는 실외놀이터 구비가 필수 요건으로 들 어가 있으나 어린이집은 50명 정원 이상인 곳만 필수 구비 요건으로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도 50명을 기준으로 하여 실외놀이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실외놀이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4-3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을 회기로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비해,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학년도로 묶어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 방식의 1년(1월-12월) 기준 행정으로의 통일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 방식의 1학년도(3월-2월) 기준 행정으로의 통일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4-4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 근로자 자녀 등으로 입소 순위가 정해져 있으나 유치원은 이러한 우선 입학 순위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입소 순위가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입소 우선 순위는 없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4-5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07:30-19:30)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3시간, 5시간, 8시간 및 종일반(17시이후까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운영시간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종일을 기본 운영으로 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V.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5.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선의 견에서 ①우선 개선은 3년 이내, ②중장기 개선은 3년 이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가장 적절한다고 생각되는 안을 오른 쪽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재정	개선 필요성			원편의 '개선 필요성'에서 ① 또는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우선 개선 필요	② 중장기 개선 필요	③ 현행 유지 필요	
5-1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일 활동이 기준이 되어 급식, 오후 활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육비는 반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급식, 오후활동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 보육료도 유치원 교육비처럼 반일기준으로 지원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동일기준으로 지원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5-2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이용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동일기준으로 동일하게 지불하는 편이 좋다.
5-3 어린이집 보육료는 '상한제'가 있어 모든 어린이집은 일정한 이상을 부모에게 부과할 수 없고, 유치원 교육비는 각 유치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상한제를 두어 비용 규제를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보육료도 유치원 교육비처럼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VI.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모델

6.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방식 중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p>노년복지부</p> <p>어린이집(보육)</p> <p>• 이용연령 : 0-5세</p>	<p>교육과학기술부</p> <p>유치원(유아교육)</p> <p>• 이용연령 : 3-5세</p>
<p><현재 우리나라 행정 체계 유형></p>	
<p>교육부</p> <p>보육시설 • 이용연령 : 0-4세</p> <p>유치원 • 이용연령 : 3-4세</p>	
<p>교육과학기술부</p> <p>유아교육 + 보육 = 유아학교 • 이용연령 : 1-6세</p>	
<p>사회부</p> <p>보육시설 • 이용연령 : 0-2세</p> <p>유치원 • 이용연령 : 3-5세</p>	<p>교육부</p> <p>에비초등교실</p> <p>• 이용연령 : 6세</p>
<p>사회복지부</p> <p>보육시설 • 이용연령 : 0-5세</p>	<p>교육부</p> <p>유아학교 • 이용연령 : 6세</p>
<p>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p> <p>보육시설 • 이용연령 : 0-2세</p>	
<p>교육과학기술부</p> <p>유치원 • 이용연령 : 3-5세</p>	
<p>□6-6) 기타 형: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p>	

□6-1) 뉴질랜드 형: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교육부가 두 기관 모두를 관할하는 방식, 동일한 교육과정 하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 자격이 통합되고 지원도 동일하나, 운영 철학이나 운영시간에 따라 두 기관이 구분됨. 보육시설은 0~4세, 유치원은 3~4세가 이용함. (5세 취학)

□6-2) 스웨덴 형: 취학전 전 연령의 영유아가 단일한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방식. 1세부터 6세까지 모든 연령의 아동이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기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업무로 되어 있음. (7세 취학)

□6-3) 덴마크 형: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이 구분되나 이들은 모두 사회부 관할이며, 6세를 위한 에비초등교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방식. 즉 사회부 소관 3세미만(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과 3~5세까지 유아를 위한 유치원이 있으며, 취학 직전인 6세는 교육부 관할인 에비초등교실에 다님. (7세 취학)

□6-4) 핀란드 형: 연령별로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을 다른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방식. 즉, 5세가 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있고 6세를 위한 유아학교가 있음.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부 소관 업무인 반면 1년 과정인 유아학교는 교육부 소관임. (7세 취학)

□6-5) 독일/프랑스 형: 연령별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기관을 구분하며,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나 구분연령 이 위의 핀란드와 다름. 즉 3세미만(0-2세) 영아는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 소관인 보육시설을 이 용하고, 3세 이상(3-5세) 유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6세 취학)

<부록3> 학부모용 설문지

유아교육·보육 행·재정 통합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인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중기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의견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 장 조 보 희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조혜주 연구원 02-398-7715, thgid@kicce.re.kr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연령	만 ____세
거주지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읍·면 지역	
연락처	(지역번호: _____) _____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전문대학(2, 3년제) 졸	<input type="checkbox"/> 3) 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졸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_)		
직업	<input type="checkbox"/> 1) 농업종사자	<input type="checkbox"/> 2) 상업·자영업	<input type="checkbox"/> 3) 공장근로자	<input type="checkbox"/> 4) 사무직근로자
	<input type="checkbox"/> 5) 서비스직근로자	<input type="checkbox"/> 6) 전문직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기타 _____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

1.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중에 선택하여 √ 표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영유아에게 있어 교육과 보육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유치원은 교육(education)을 중심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돌봄(care)을 중심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운영 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능과 목적이 다르지 않는 기관이므로 동일한 행정부처 관할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현행: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①	②	③	④	⑤

1-1. 위 1번 문항의 1)~5) 중 '①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②별로 그렇지 않다'로 예 응답하신 항목이 있으시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I.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 및 법

2.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 및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1)인지역부 및 2)개선 필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3)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개선안을 하나만 선택하여 □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행정 및 법 체계	1)인지역부		2)개선 필요성		3)원편의 '개선 필요성'에서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개선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알고 있다	모른 다	① 현행 체도가 적절함	② 개선이 필요함	
2-1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5세까지,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도 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닐 수 있게 하여 어린이집과 구분을 없앴.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1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③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2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④어린이집은 0세~만5세, 유치원은 만4세~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⑤어린이집은 0세~만2세까지 돌보고, 3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⑥어린이집은 0세~만3세까지 돌보고, 4세 이상은 모두 유치원을 다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⑦어린이집은 0세~만4세, 유치원은 만5세가 다닐 수 있게 함 <input type="checkbox"/> ⑧기타 의견: _____
2-2 유치원은 학교 체계에 속하여 교육법을 따르고, 어린이집은 복지시설로서 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이 복지시설로 통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이 학교 체계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두 기관 모두 학교도, 복지시설도 아닌 새로운 법에 의거하도록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의견: _____
2-3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업무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건복지부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새로운 제3의 부처 업무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2-4 어린이집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관리를 받고 유치원은 교육청의 관리를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도 시도 및 시군구청의 관리와 지원을 받도록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III.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계

3.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1)인지여부 및 2)개선 필요성 및 3)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개선을 하나만 선택하여 □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지원체계	1)인지여부		2)개선 필요성		3)원편의 개선 필요성에서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개선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알고 있다	모든 다	① 현행 제도가 적절함	② 개선이 필요함	
3-1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장학사의 장학지도도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필요성은 느끼나 제도적 장학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장학 인력을 확충하여 어린이집도 같이 장학지도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장학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여 보육과정 장학사를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3-2 유치원은 유치원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원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수준미달인 경우 탈락 후 재인증을 받게 하여 질적 수준 관리를 진행한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평가도 어린이집처럼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유치원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3-3 2011년 통계를 보면, 행정인력의 면에서, 보육은 행정직 공무원 1명이 평균 49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유아교육은 1명 행정공무원이 80개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보육공무원의 수를 감소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아교육 행정공무원 수를 확충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두 업무 모두 공무원 수를 확충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④업무를 통합하여 현재 공무원 수로 유·보 모두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IV.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1)인지여부 및 2)개선 필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3)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개선을 하나만 선택하여 □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보 설치 및 운영	1)인지여부		2)개선 필요성		3)원편의 '개선 필요성'에서 ②에 응답하신 경우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개선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알고 있다	모르다	① 현행 체도가 적절함	② 개선이 필요함	
41 어린이집은 임대 건물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유차원은 임대 건물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①어린이집도 임대 건물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②유치원도 임대 건물에 운영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③기타 의견: _____
42 유치원 설립에는 실외놀이터 구비가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으나 어린이집은 50명 정원 이상인 곳만 필수 구비 요건으로 되어 있다.					□①유치원도 50명을 기준으로 하여 실외놀이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②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실외놀이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③기타 의견: _____
43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을 회기로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비해,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학년도로 묶어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①어린이집 방식의 1년(1월-12월) 기준 행정으로의 통일이 좋다. □②유치원 방식의 1학년도(3월-2월) 기준 행정으로의 통일이 좋다. □③기타 의견: _____
44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 근로자 자녀 등으로 입소 순위가 정해져 있으나 유치원은 이러한 우선 입학 순위가 없다.					□①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입소 순위가 있어야 한다. □②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입소 우선 순위는 없는 편이 좋다. □③기타 의견: _____
45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종일 12시간(07:30-19:30)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3시간, 5시간, 8시간 및 종일반(17시이후까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①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운영시간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 좋다. □②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종일을 기본 운영으로 하는 편이 좋다. □③기타 의견: _____

V.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5. 다음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1)인지어부 및 2)개신 필요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3)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개신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행 유·보 재정	1)인지어부		2)개신 필요성		3)원편의 '개신 필요성'에서 ②에 응답하신 경우 이래에서 가장 적절한 개신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있 다	모 든 다	① 현 행 제 도가 적 절 함	② 개 신 이 필 요 함	
5-1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종일 활동이 기준이 되어 급식, 오후 활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육비는 반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급식, 오후활동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 보육료도 유치원 교육비처럼 반일기준으로 지원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종일기준으로 지원하는 편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5-2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이용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유치원 교육비는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input type="checkbox"/> ①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종일기준으로 동일하게 지불하는 편이 좋다.
5-3 어린이집 보육료는 '상한제'가 있어 모든 어린이집은 일정액 이상을 부모에게 부과할 수 없고, 유치원 교육비는 각 유치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교육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상한제를 두어 비용 규제를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보육료도 유치원 교육비처럼 각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③기타 의견: _____

VI.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모델

6.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 체계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방식 중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보육) • 이용연령 : 0-5세	유치원(유아교육) • 이용연령 : 3-5세
<현재 우리나라 행정 체계 유형>		
□6-1) 뉴질랜드	보육시설 • 이용연령 : 0-4세	교육부 유치원 • 이용연령 : 3-4세
□6-2) 스웨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유아교육 + 보육 = 유아학교 • 이용연령 : 1-6세
□6-3) 덴마크	사회부 보육시설 • 이용연령 : 0-2세	교육부 유치원 • 이용연령 : 3-5세 에비초등교실 • 이용연령 : 6세
□6-4) 핀란드	사회보장부 보육시설 • 이용연령 : 0-5세	교육부 유아학교 • 이용연령 : 6세
□6-5) 독일/프랑스	청소년가족여성보장부 보육시설 • 이용연령 : 0-2세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 이용연령 : 3-5세
□6-6) 기타	항: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6-1) 뉴질랜드 항: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교육부가 두 기관 모두를 관할하는 방식. 동일한 교육과정 하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 자격이 통합되고 지원도 동일하나, 운영 철학이나 운영시간에 따라 두 기관이 구분됨. 보육시설은 0~4세, 유치원은 3~4세가 이용함. (5세 취학)

□6-2) 스웨덴 항: 취학전 전연령의 영유아가 단일한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방식. 1세부터 6세까지 모든 연령의 아동이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기관(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업무로 되어 있음. (7세 취학)

□6-3) 덴마크 항: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이 구분되나 이들은 모두 사회부 관할이며, 6세를 위한 에비초등교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방식 즉 사회부 소관 3세미만(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3~5세까지 유아를 위한 유치원이 있으며, 취학 직전인 6세는 교육부 관할인 에비초등교실에 다님. (7세 취학)

□6-4) 핀란드 항: 연령별로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을 다른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방식. 즉, 5세가 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있고 6세를 위한 유아학교가 있음. 보육시설은 사회보장부 소관 업무인 반면 1년 과정인 유아학교는 교육부 소관임. (7세 취학)

□6-5) 독일/프랑스 항: 연령별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기관을 구분하며,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나 구분연령이 위의 핀란드와 다름. 즉 3세미만(0-2세) 영아는 청소년가족여성보장부 소관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3세 이상(3-5세) 유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6세 취학)

□6-6) 기타 항: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연구보고 2011-09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75-2 93330